아세안 지속가능금융 택소노미의 검토

최 창 민*

차 례

Ⅰ. 머리말
Ⅱ. 아세안 택소노미의 개발 경과
Ⅲ. 아세안 택소노미의 의의
Ⅳ. 아세안 택소노미의 내용
Ⅴ. 아세안 택소노미의 적용
Ⅵ. 맺음말

【국문초록】

기후변화는 인류와 생태계가 직면한 위기이다. 특히 아세안 지역은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하다. 경제 규모와 성장률에 비춰보면 아세안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은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수준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아세안 경제를 이러한 공약과 파리협정에 부합하도록 전환하려면 대규모 사적 자본이 녹색경제 활동에 조달돼야 한다.

아세안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지속가능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 4개 아세안 부문별 기구는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아세안 택소노미' 개발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제창하며 아세안 택소노미 위원회를 설립했다. 아세안 택소노미 위원회는 2021. 11. 10.「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아세안 택소노미 – 버전 1」을 발표했다. 아세안 택소노미는 발행자와 투자자가 역내 프로젝트·경제 활동의 지속가능성 영향을 이해하고 정보에 기반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이 글은 아세안 택소노미의 개발 경과(Ⅱ장)와 의의(Ⅲ장), 내용(Ⅳ장)과 그 적용(Ⅴ장)에 대해 설명한다. 아세안 택소노미가 다른 택소노미와 구별되는 주요한 특징은 다층 구조와 신호등 체계라고 할 수 있다. Ⅳ장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특징과 함께 다층 택소노미를 구성하는 기반체계(Tier 1)와 추가표준(Tier 2)의

* 법무법인(유) 지평

www.kci.go.kr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Ⅴ장에서는 아세안 택소노미에 따라 녹색, 황색, 적색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제활동의 사례를 제시하고,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천연가스 발전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아세안 택소노미의 태도를 확인한다.

아세안 택소노미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려면 다른 택소노미와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아세안 택소노미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및 EU 택소노미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짚어본다. 또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택소노미는 아세안 택소노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양자의 주목할 부분도 함께 살펴본다.

아세안 택소노미의 기반체계는 말레이시아 택소노미와 유사하며 모든 분야의 경제활동을 단일한 결정트리에 따라 분류한다. 반면에 추가표준은 EU, 한국, 싱가포르 택소노미와 같이 활동별 심사기준을 사용하여 특정한 분야의 경제활동을 평가한다. 아세안 택소노미가 신호등 체계를 도입하여 전환 활동의 범주를 추가한 것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택소노미와 동일하다. 아세안 택소노미가 다른 택소노미들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인권과 노동의 측면에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세안 택소노미에는 '지속가능금융을 위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버전 1은 여러 환경목표 중에서도 기후변화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ATB는 아세안 택소노미의 다음 버전에서 지속가능금융의 다른 영역을 포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류체계의 내용에 관해서도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아세안 택소노미가 지역 내외의 다른 택소노미와 조응하며 과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고 아세안의 기후변화 대응에 성공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Ⅰ. 머리말

기후변화[1])는 인류와 생태계가 직면한 위기이다.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1.5도 이상 상승하면 폭염, 기상재해, 해수면 상승 등을 초래하고 건강, 생계, 식량 안보, 물 공급, 인간 안보, 경제 성장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킬 것으로

1)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제1조는 '기후변화'를 "전 지구 대기의 조성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활동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원인이 되어 일어나고, 충분한 기간 동안 관측된 자연적인 기후변동성에 추가하여 일어나는 기후의 변화"라고 정의한다.

www.kci.go.kr

전망된다.[2]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이하 'IPCC')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 가까이 줄이지 않는다면 지구 온난화를 1.5도로 제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3]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하 '아세안')[4] 지역은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하다.[5] 지난 20년 동안 기상이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의 목록에는 다수의 아세안 국가들이 포진되어 있다.[6] 아세안에서 기후 재해로 인하여 사망, 실종되거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의 숫자는 2018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3,500여 명에 달한다.[7] 아세안 지역의 기후변화로 인한 GDP 손실은 2100년 1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8]

---

2)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Global Warming of 1.5℃ - An IPCC Special Report on the impacts of global warming of 1.5°C above pre-industrial levels and related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 pathways, in the context of strengthening the global response to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fforts to eradicate poverty*, 2018, pp. 7-10 참조.

3)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Climate Change 2022: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 Working Group III contribution to the Six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2022. 4., pp. 21-22. 보고서를 작성한 IPCC 실무그룹의 짐 스케아 공동의장은 "지구 온난화를 1.5도로 제한하려면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전 분야에 걸친 급격하고 즉각적인 배출 감소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ieran Mulvaney, "'It's now or never': UN climate report's 4 urgent takeaways", *National Geographic*, 2022. 4. 5., https://www.nationalgeographic.com/environment/article/now-or-never-un-climate-report-urgent-takeaways 참조.

4)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의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아세안은 2020년 기준으로 인구 약 6억 634만 명, 면적 약 449만 km^2, GDP 3조 776억 달러, 총교역량 2조 5,750억 달러(수출 1조 3,068억 달러, 수입 1조 2,682억 달러)를 기록한다. 외교부, 아세안 개황, 2021. 12., 14-15 면.

5) 아세안 사무국은 아세안 지역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원인을 ① 높은 수준의 극심한 빈곤, ② 기후변화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경제·사회 부문(농업 및 기타 천연자원 등)에 대한 높은 의존도, ③ 기존 재해(가뭄, 태풍, 홍수 등) 손실·피해로 인한 스트레스, ④ 글로벌 공급망과 국제하천을 통한 지역 위기의 국제화, ⑤ 다수의 해안도시와 경제활동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광활한 해안선, ⑥ 높은 이주 성향(으로 인한 인구밀집의 부작용), ⑦ 일부 지역의 높은 산림파괴율로 분석했다. ASEAN Secretariat, *ASEAN State of Climate Change Report*, 2021. 10., pp. 35-38.

6) 미얀마(2위), 필리핀(4위), 태국(9위), 베트남(13위), 캄보디아(14위). Germanwatch, *Global Climate Risk Index 2021*, 2021. 1. 25., pp. 42-47.

7) ASEAN Secretariat, *AS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dicators Baseline Report 2020*, 2020. 11., p. 183.

8) Asian Development Bank (ADB), *Southeast Asia and the Economics of Global Climate*

www.kci.go.kr

1. 아세안의 기후변화 대응

아세안은 경제 규모와 성장률에 비춰보면 앞으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아세안 10개국의 GDP 합계는 2019년 기준 약 3.2조 달러로 세계 5위 규모이며,[9] 이는 2030년에 세계 4위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10]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1.9%에서 2020년 13.7%로 성장했다.[11] 아세안에서 국제 프로젝트 파이낸스 금액은 2015~2017년 연간 370억 달러에서 2018~2020년 연간 740억 달러로 두 배 증가했다.[12]

경제 성장은 일반적으로 에너지 수요와 탄소 배출의 증가를 동반하므로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의 5.6%에서 앞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13] 가령 아세안에너지센터는 아세안의 전력 수요가 2018년 1.05 PWh에서 2040년 2.46 PWh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14] 또한 아시아개발은행은 아세안에서 화력발전이 다른 에너지원보다 빠르게 성장(2014년 대비 2030년에 218% 증가)하고, 주요 6개 에너지 소비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에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35 GW의

Stabilization, 2015, pp. 50-51.

9) ASEAN Secretariat, “ASEAN development trajectories reach new milestone”, ASEAN Secretariat 웹페이지, 2021. 8. 23., https://asean.org/asean-development-trajectories-reach-new-milestone/ 참조.

10) Joo-Ok Lee and Shaun Adam, “ASEAN is poised for post-pandemic inclusive growth and prosperity − here's why”, World Economic Forum 웹페이지, 2022. 1. 18., https://www.weforum.org/agenda/2022/01/asean-is-poised-for-post-pandemic-inclusive-growth-and-prosperity-heres-why/ 참조.

11) ASEAN Secretariat, *ASEAN Investment Report 2020-2021 − investing in Industry 4.0*, 2021. 9., p. 4.

12) ASEAN Secretariat, 앞의 문헌(註11), p. 10.

13) Sharon Seah, “ASEAN Taxonomy for Sustainable Finance: Putting Money Where the Mouth Is,” ISEAS − Yusof Ishak Institute (Fulcrum) 웹페이지, 2022. 4. 8., https://fulcrum.sg/asean-taxonomy-for-sustainable-finance-putting-money-where-the-mouth-is/ 참조.

14) PWh는 시간당 페타와트(1 페타와트는 1천조 와트)를 의미한다. ASEAN Centre for Energy, “How Does ASEAN Coal Sector Look In The First Quarter Of 2019?”, ASEAN Centre for Energy 웹페이지, 2019. 4. 4., https://aseanenergy.org/how-does-asean-coal-sector-look-in-the-first-quarter-of-2019/ 참조.

www.kci.go.kr

석탄 발전 용량이 추가될 것으로 예측했다.[15)]

아세안의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는 화석연료를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아세안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려면 현재로서는 실행 가능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고배출 산업 분야(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에서도 탈탄소화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16)]

아세안은 그동안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수준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해 왔다. 먼저 국제적 수준에서 아세안의 모든 회원국은 2016년 「파리협정」에 서명했다.[17)]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해야 하고 1.5 ℃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한다. 이들 국가는 같은 해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동의했고,[18)] 2017년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의 실행을 위한 지역적 로드맵」에 동의했다.[19)]

---

15) Asian Development Bank (ADB), *The Impact of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on the Energy Sector − Implications for ADB and its Developing Member Countries*, 2018. 7., p. xiv. 다만 아세안이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강화함에 따라 이러한 예측에도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베트남의 팜민찐 총리는 2021. 11.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배출을 저감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Vietnam Government Portal (VGP), "Viet Nam leads Southeast Asia in transition to clean energy: The Economist", VGP News 웹페이지, 2022. 6. 6., https://en.baochinhphu.vn/viet-nam-leads-southeast-asia-in-transition-to-clean-energy-the-economist-111220606104952599.htm 참조. 인도네시아 역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의 재정·기술 지원을 조건으로 2040년대까지 석탄 폐지를 가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Global Coal to Clean Power Transition Statement",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웹페이지, 2021. 11. 4., https://ukcop26.org/global-coal-to-clean-power-transition-statement/ 참조.

16) Green Finance Industry Taskforce (GFIT), *Identifying a Green Taxonomy and Relevant Standards for Singapore and ASEAN*, 2021. 1. 28., p. 19.

17)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후변화에 관한 조약으로서, 2015. 12. 12.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6개 당사국에 의해 채택됐고 2016. 11. 4. 발효했다.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The Paris Agreement", UNFCCC 웹페이지, https://unfccc.int/process-and-meetings/the-paris-agreement/the-paris-agreement (2022. 6. 4. 방문) 참조.

18)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중에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목표 7. 적정한 가격에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과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이 포함된다. United Nations,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웹페이지, https://sdgs.un.org/2030agenda (2022. 6. 12. 방문) 참조.

19)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의 실행을 위한 지역적 로드맵」은 특히 기후변화

www.kci.go.kr

지역적 수준에서는 아세안 회원국이 2015년 채택한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가 아세안 공동체 구축 노력과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상호보완성을 강조했다.[20] 이듬해 채택한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2025 청사진」은 사회적 개발과 지속가능한 환경의 균형을 위한 전략조치를 제시했다.[21] 특히 에너지 정책에 관해서는 2019년 아세안 10개국 에너지 장관들이 ① 1차 에너지 공급량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25년까지 23%로 늘릴 것, ② 에너지 집약도를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20%, 2025년까지 30% 줄일 것, ③ 천연가스가 에너지 미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 ④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등 청정 석탄 기술을 촉진할 것에 대해 합의했다.[22]

국가적 수준에서 아세안 각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NDC')를 제출했다. 아세안 회원국이 NDC에서 공약한 감축목표는 아래의 표와 같다.[23]

<표 1> 아세안 회원국의 NDC

국가	감축 유형	감축 목표	참조 기준	목표 연도
브루나이	상대적 배출 감소	20%	BAU	2030
캄보디아	상대적 배출 감소	41.7% (산림 및 기타토지이용 포함)	BAU	2030
인도네시아	상대적 배출 감소	무조건부 29%, 조건부 41%	BAU	2030

문제와 관련하여 ① 정책 대화와 경험·정보 공유를 통해 기후대응조치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② 기후변화, 기후복원에 관한 회원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 ESCAP), *Regional Road Map for Implementing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Asia and the Pacific*, 2017, pp. 15-16.

20) ASEAN, *ASEAN Community Vision 2025*, 2015, para. 6.

21)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2025 청사진」은 사회적 개발과 지속가능한 환경의 균형을 위한 4개 요소(① 생물다양성과 천연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관리, ②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③ 지속가능한 기후, ④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대한 전략조치 중에 특히 지속가능한 기후의 전략조치로서 '사적 분야와 공동체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 메커니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ASEAN,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Blueprint 2025*, 2016, pp. 10-13. 아세안 택소노미의 개발 역시 이러한 전략조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22) ASEAN Ministers for Energy, *Joint Ministerial Statement of the 37th ASEAN Ministers on Energy Meeting*, 2019. 9. 4., pp. 2-5.

23) ASEAN Secretariat, 앞의 문헌(註5), pp. 137-143 참조.

www.kci.go.kr

국가	감축 유형	감축 목표	참조 기준	목표 연도
라오스	상대적 배출 감소	무조건부 40%, 조건부 50%	BAU	2030
말레이시아	탄소집약도 감소	무조건부 35% + 조건부 10%	2005	2030
미얀마	상대적 배출 감소	업데이트 필요	BAU	2030
필리핀	상대적 배출 감소	무조건부 2.71%, 조건부 75%	BAU	2030
싱가포르	절대적 배출 정점	65 MtCO2eq	-	2030
태국	상대적 배출 감소	무조건부 20%, 조건부 25%	BAU	2030
베트남	상대적 배출 감소	무조건부 9%, 조건부 27%	BAU	2030

* BAU(Business As Usual):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의 배출전망치

이러한 아세안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2,000억 달러(총 3조 달러)에 달하는 녹색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24] 그러나 2017년 당시 아세안의 연간 녹색투자액은 400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고, 이중에서 사적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불과했으며, 공적 기여는 향후 4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25] 아세안의 수요를 충족하려면 민간 녹색투자가 10배 이상 증가해야 하지만, 불충분한 환경 공시와 제한된 정보 공유 등의 장애가 녹색금융의 확대를 가로막는 것으로 분석됐다.[26]

아세안 경제를 파리협정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전환하려면 대규모 사적 자본이 녹색활동에 조달돼야 한다. 그 선결과제는 무엇이 진정한 녹색활동인지 판단하는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2021. 11.「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아세안 택소노미 – 버전 1」(이하 '아세안 택소노미')[27]이 발표됐다.

24)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Annual ASEAN green investment needs to grow 400% to guard against environmental risks", UNEP 웹페이지, 2017. 11. 15., https://www.unep.org/news-and-stories/press-release/annual-asean-green-investment-needs-grow-400-guard-against 참조.

25) UNEP, 앞의 웹페이지.

26) UNEP, 앞의 웹페이지.

27) ASEAN Taxonomy Board (ATB), *ASEAN Taxonomy for Sustainable Finance – Version 1*, 2021. 11. 10.

www.kci.go.kr

2. 지속가능금융 택소노미의 정의

아세안 택소노미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아세안 택소노미」라는 이름에 포함된 '지속가능금융'과 '택소노미'의 개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택소노미는 이러한 개념을 직접 정의하지 않으므로 국제자본시장협회(이하 'ICMA')의 정의[28]를 참조한다.

'지속가능금융'은 기후금융[29], 녹색금융[30], 사회적금융[31]을 포괄하며, 자금이 투입되는 조직의 경제적 장기 지속가능성과 전반적인 금융체계의 역할과 안정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32] (지속가능금융의 맥락에서) '택소노미'는 기후, 녹색, 사회, 지속가능 목표를 이행하는 활동, 자산, 프로젝트를 임계와 타깃에 따라 식별하는 분류체계를 의미한다.[33] 아래의 그림은 지속가능금융과 관련된 주요 개념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34]

이처럼 폭넓은 '지속가능금융'과 '택소노미'의 정의에 따른다면「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아세안 택소노미」는 녹색금융(기후금융 포함), 사회적금융, ESG투자[35]의 목표를 달성하고 기업과 금융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ATB는 아세안 택소노미의 서두에서 이번 '버전 1'은 기후변화(그중에서도 기후변화 완화)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됐다고 밝히고 있다.[36] 이처럼 제한된 영역을 다루는 아세안 택소노미는 지속가능금융 택소노미라기보다는 녹

---

28)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 (ICMA), *Sustainable Finance − High-level Definitions*, 2020. 5.

29) '기후금융'은 완화 조치(특히 온실가스 배출 저감)와 적응 이니셔티브(인프라와 일반적 사회·경제 자산의 기후복원 촉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후복원적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자금조달이다. ICMA, 앞의 문헌, p. 4.

30) '녹색금융'은 '기후금융'보다 광범위하며 천연자원 보전, 생물다양성 보전, 오염 방지 및 관리와 같은 다른 환경목표도 다룬다. ICMA, 앞의 문헌, p. 4.

31) '사회적금융'은 특정 사회문제를 완화·해결하거나 대상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는 자금조달이다. ICMA, 앞의 문헌, p. 4.

32) ICMA, 앞의 문헌, p. 5.

33) ICMA, 앞의 문헌, p. 5.

34) ICMA, 앞의 문헌, p. 6.

35) 'ESG투자' 또는 '책임투자'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 결정과 액티브 오너십에서 중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통합하는 전략과 관행을 의미한다. ICMA, 앞의 문헌, p. 4.

36) ATB, 앞의 문헌, p. 3.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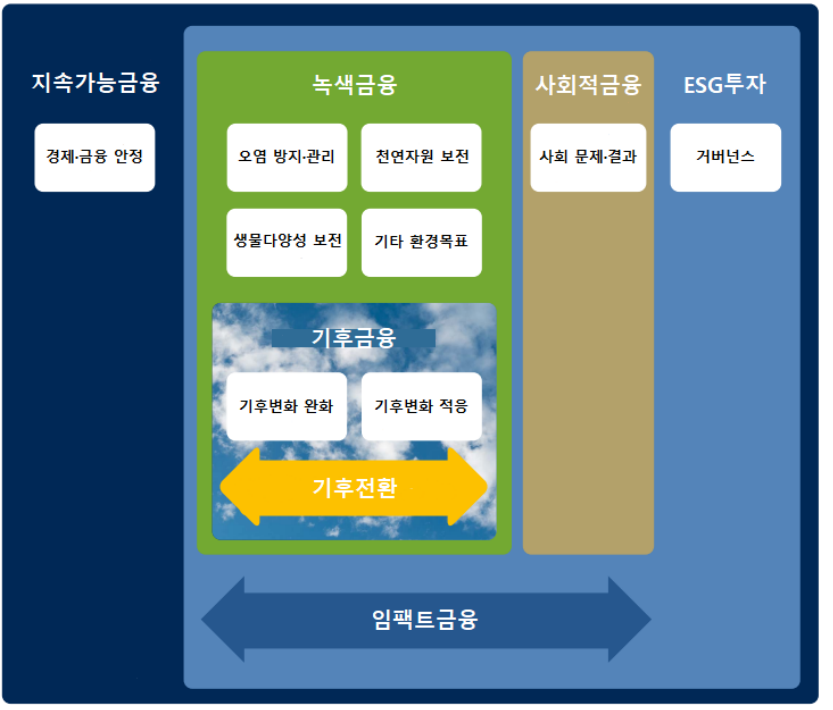

[그림 1] 지속가능금융 개념도

색금융이나 기후금융 택소노미에 가깝다. 특히 아세안 택소노미가 인권, 노동 등에 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는 아래에서 설명한다)에서 사회적금융을 포괄하는 지속가능금융이라는 이름은 아직 어울리지 않는다. 다만 ATB는 아세안 택소노미의 다음 버전에서 지속가능성의 다른 측면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공언했으므로,[37] 아세안 택소노미가 버전을 거듭하며 명실상부한 지속가능금융 택소노미로 정립될 것인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37) ATB, 앞의 문헌, p. 3. 다만 아세안 택소노미가 다음 단계의 과제로 '기타 환경목표를 전반적인 분류체계에 통합할 것'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아세안 택소노미가 녹색 택소노미를 넘어서 소셜 택소노미의 내용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ATB, 앞의 문헌, p. 83 참조.

www.kci.go.kr

3. 이 글의 개요

이 글은 아세안 택소노미의 개발 경과(Ⅱ장)와 의의(Ⅲ장), 내용(Ⅳ장)과 그 적용(Ⅴ장)에 대해 설명한다. 아세안 택소노미가 다른 택소노미와 구별되는 주요한 특징은 다층 구조와 신호등 체계라고 할 수 있다. Ⅳ장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특징과 함께 다층 택소노미를 구성하는 기반체계(Foundation Framework)와 추가표준(Plus Standard)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Ⅴ장에서는 아세안 택소노미에 따라 녹색, 황색, 적색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제활동의 사례를 제시하고,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스·원자력 발전에 대한 아세안 택소노미의 태도를 확인한다. 필자는 이 글이 아세안 택소노미에 대한 우리나라 학계와 실무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다른 주요 택소노미들과 구별되는 아세안 택소노미의 특징(다층 구조, 신호등 체계, 적층식 임계, 최소한의 보호장치의 부재 등)이 시사하는 규범적 의의를 개관함으로써, 향후 지속가능금융 택소노미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

아세안 택소노미의 특징은 다른 택소노미와 비교하였을 때 보다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 글에서는 아세안 택소노미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K-택소노미')[38]나 EU 택소노미[39]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다. K-택소노미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사례로서, EU 택소노미는 지속가능금융과 택소노미의 세계적 흐름을 이끌어 가는 선도적 사례로서 비교군으로 설정했다. 아세안 택소노미는 직접 밝히지 않았으나 개발 과정에서 EU 택소노미와 기후채권이니셔티브(이하 'CBI')의 기후채권 택소노미[40]를 비롯한 여러 선행 사례를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41]

---

38) 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2021. 12.

39) 유럽의회 및 이사회가 EU 택소노미에 관하여 규정한 규칙은 「REGULATION (EU) 2020/85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June 2020 on the establishment of a framework to facilitate sustainable investment,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9/2088 (Text with EEA relevance)」(이하 'EU 택소노미 규칙')이다.

40) CBI의 기후채권 택소노미는 특정한 자산·프로젝트가 파리협정의 1.5℃ 탄소배출 저감경로에 자동적으로 호환되는지 평가하기 위해 신호등 체계를 도입했다. 기후채권 택소노미에서 녹색은 '자동적으로 호환됨', 황색은 '심사지표에 부합하면 호환됨', 적색은 '호환되지 않음', 회색은 '추가 작업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Climate Bonds Initiative, *Climate Bonds Taxonomy*, 2021. 9., p. 1. 아세안 택소노미가 신호등 체계를 도입한 것은 기후채권 택소노미의 영향을 일부 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기후채권 택소노미에서 황색은 저탄소 경제에 호환되는지 추가적인

www.kci.go.kr

아세안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택소노미를 발표한 경우도 있다.[42]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하 'BNM')은 2021. 4. 「기후변화 및 원칙 기반 택소노미」(이하 '말레이시아 택소노미')[43]를 발표했다. 싱가포르에서는 통화청이 소집한 녹색금융산업 태스크포스(이하 'GFIT')가 「싱가포르와 아세안을 위한 녹색 택소노미 및 관련 표준 식별」[이하 '싱가포르 택소노미(안)' 또는 '싱가포르 택소노미'] 1차 보고서(2021. 1.)[44]와 2차 보고서(2022. 5.)[45]를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이들 보고서는 싱가포르 택소노미 개발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작성된 것이며 GFIT는 2023년에 싱가포르 택소노미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46]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택소노미는 아세안 택소노미의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양자의 주목할 부분도 함께 살펴본다.

Ⅱ. 아세안 택소노미의 개발 경과

아세안이 지속가능금융 택소노미의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식한 후로부터 아세안 택소노미의 초기 버전을 발표하기까지는 채 3년이 걸리지 않았다. 이 장에서는 아세안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이하 'AFMGM')의 연례 공동선언문을 중심으로 아세안 택소노미의 개발 경과를 살펴본다.

심사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아세안 택소노미와 같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전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41) ASEAN Capital Markets Forum (ACMF), *Roadmap for ASEAN Sustainable Capital Markets*, 2020, pp. 16-17 참조. 한편 K-택소노미는 개발 과정에서 EU 택소노미, 국제표준화기구(ISO) 택소노미, 중국 녹색채권보증 카탈로그를 검토했다고 밝힌다. 환경부, 앞의 문헌, 8면.

42) 이 글에서 다루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택소노미 외에도 아세안 회원국 중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이 자국의 택소노미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International 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 (IPSF), *Common Ground Taxonomy − Climate Change Mitigation*, 2021. 11. 4., pp. 39-41.

43) Bank Negara Malaysia (BNM), *Climate Change and Principle-based Taxonomy*, 2021. 4. 30.

44) GFIT, 앞의 문헌(註16) 참조.

45) Green Finance Industry Taskforce (GFIT), *Identifying a Green Taxonomy and Relevant Standards for Singapore and ASEAN*, 2022. 5. 12.

46) GFIT, 앞의 문헌(註45), p. 124.

www.kci.go.kr

1. 택소노미의 필요성 인식

AFMGM은 2019년 「제5차 AFMGM 공동선언문」에서 지속가능금융이 아세안의 경제효율, 번영, 경쟁력을 개선하면서도 생태계를 보호하고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적 웰빙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47] 2020년 「제6차 AFMGM 공동선언문」에서는 지속가능금융 의제가 은행, 자본시장, 보험 분야를 아울러 융합적으로 진척할 수 있도록 아세안 실무위원회들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48]

아세안의 금융 협력은 아세안 자본시장 포럼(이하 'ACMF'), 아세안 보험규제기관 회의(이하 'AIRM'), 아세안 금융통합 고위급 위원회(이하 'SLC'), 아세안 자본시장발전 실무위원회(이하 'WC-CMD')의 4개 부문별 기구가 조정한다. 이들은 AFMGM이 지속가능금융의 중요성을 설파한 시점을 전후하여 역내 공통의 택소노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ACMF의 「아세안 지속가능 자본시장 로드맵」,[49] SLC의 「기후 및 환경 관련 위기 관리에서 아세안 중앙은행의 역할에 관한 보고서」,[50] WC-CMD의 「아세안의 지속가능금융 증진에 관한 보고서」[51]는 아세안의 지속가능금융 의제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면서, 그린 워싱[52]을 방지하고 녹색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아세안 공통의 택소노미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

47) ASEAN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 (AFMGM), *Joint Statement of the 5th ASEAN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 2019. 4. 5., para. 21.

48) ASEAN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 (AFMGM), *Joint Statement of the 6th ASEAN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 2020. 10. 2., para. 26.

49) ACMF, 앞의 문헌(註41), pp. 16-17 참조.

50) ASEAN Senior Level Committee on Financial Integration (SLC), *Report on The Roles of ASEAN Central Banks in Managing Climate and Environment-related Risks*, 2020. 11. 17., pp. 66-69 참조.

51) ASEAN Working Committee on Capital Market Development (WC-CMD), *Report on Promoting Sustainable Finance in ASEAN*, 2020. 4. 29., pp. 61-66 참조.

52) 그린 워싱(green washing)이란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을 추구하는 것처럼 왜곡된 인상과 정보를 제공하여 대중을 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www.kci.go.kr

2. 아세안 택소노미 위원회 설립

ACMF, SLC, WC-CMD, AIRM의 4개 아세안 부문별 기구는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아세안 택소노미' 개발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제창하며 2021. 3. 아세안 택소노미 위원회(ASEAN Taxonomy Board, 이하 'ATB')를 설립했다. ATB는 아세안 10개국의 대표기관(주로 중앙은행이나 금융당국)으로 구성되고[53] AFMGM의 감독을 받으며 아시아 지속가능금융 연구소(Sustainable Finance Institute Asia)의 행정 지원을 받는다.

AFMGM은 2021년 「제7차 AFMGM 공동선언문」에서 아세안 택소노미 개발 이니셔티브를 환영하고 ATB 설립을 지지하면서 2021년말까지 아세안 택소노미의 개발 진척이 발표되기를 기대했다.[54] 한편 지속가능금융은 2021년부터

---

53) 2021. 11. 현재 ATB를 구성하는 아세안 각국의 대표기관은 다음과 같다. ASEAN Secretariat, "ASEAN Sectoral Bodies Release ASEAN Taxonomy for Sustainable Finance − Version 1", ASEAN Secretariat 웹페이지, 2021. 11. 10., https://asean.org/asean-sectoral-bodies-release-asean-taxonomy-for-sustainable-finance-version-1/ 참조.

- 의장(브루나이): Brunei Darussalam Central Bank, Mdm. Noorrafidah Sulaiman, Deputy Managing Director (Monetary Operations,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 부의장(싱가포르): Vice-Chair: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r. Daniel Wang, Executive Director (Insurance).
- 캄보디아: Non-Bank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NBFSA) of Cambodia, Mr. Mey Vann, Secretary of State of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and Secretary General, General Secretariat of NBFSA.
- 인도네시아: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of Indonesia, Mr. Greatman Rajab, Senior Executive Analyst.
- 라오스: Bank of Lao PDR, Mrs. Fongchinda Sengsourivong, Director General (International Cooperation).
- 말레이시아: Bank Negara Malaysia, Mr. Fraziali Ismail, Assistant Governor. Securities Commission Malaysia, Mr. Zainal Izlan Zainal Abidin, Deputy Chief Executive.
- 미얀마: 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 of Myanmar, Mr. Zaw Naing, Director General (Financial Regulatory).
- 필리핀: Philippines Insurance Commission, Mr. Dennis Funa, Commissioner.
- 싱가포르: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s. Gillian Tan, Assistant Managing Director (Development & International).
- 태국: Bank of Thailand, Mrs. Roong Mallikamas, Assistant Governor.
- 베트남: State Securities Commission of Viet Nam, Mr. Vu Chi Dzung, Director General (International Cooperation).

54) ASEAN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 (AFMGM), *Joint Statement of the 7th ASEAN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

www.kci.go.kr

AFMGM과 아세안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의 영구의제가 됐다.[55]

3. 아세안 택소노미 버전 1 발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2021. 10. 31.부터 11. 13.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됐다. 이에 즈음하여 ATB는 2021. 11. 10.「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아세안 택소노미 – 버전 1」을 발표했다. ATB는 버전 1에 대한 이해관계자 협의를 개시하고 이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아세안 택소노미의 다음 버전 개발에 사용할 예정이다.[56]

AFMGM은 2022년「제8차 AFMGM 공동선언문」에서 ATB의 진척을 치하하면서 아세안 택소노미가 아세안 회원국의 수요에 맞추어 지속가능금융 택소노미의 주요 요소들을 함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아세안 택소노미의 접근방식이 포용성, 투명성, 실용성, 촉진성을 갖추면서도 지역적·국제적 지속가능성 야망에 부합하는 엄정한 경로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57]

Ⅲ. 아세안 택소노미의 의의

아세안 택소노미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이 장에서는 지역기구인 아세안이 택소노미를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세안 택소노미의 법적 구속력과 같은 성격은 다른 택소노미와 비교해 어떻게 다른지 검토한다.

1. 아세안 택소노미의 취지

아세안 회원국들은 개별적으로 녹색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국내 제도를

2021. 3. 30., paras. 18-19.

55) ATB, 앞의 문헌, p. 19.

56) ASEAN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 (AFMGM), *Joint Statement of the 8th ASEAN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 2022. 4. 8., para. 25.

57) AFMGM, 앞의 문헌(註56), para. 24.

www.kci.go.kr

마련하고 있다. 가령 6개 아세안 회원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의 거래소는 지속가능성 보고를 의무화하고 국내 보고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58]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는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요소를 포함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도 했다.[59] 이러한 아세안 회원국의 국내 제도와 정책은 각국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데, 문제는 아세안 10개국의 개발 수준과 경제 구조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아래의 도표는 2019년 기준으로 아세안 회원국의 1인당 GDP와 산업 구조를 보여준다.[60]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는 고소득 국가로 분류되지만 대다수의 아세안 회원국은 저소득 내지 중소득 국가에 해당한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에서는 서비스업이 경제활동의 60% 이상을 차지하지만,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에서는 40% 미만에 머문다. 탄화수소 제조에 의존하는 브루나이의 경제는 제조업에 기반하는 반면에,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GDP의 10% 이상은 탄소 배출량이 거의 없는 농업에서 발생된다.

아세안 각국의 국내 정책이 지역 수준에서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 국제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세안 기업과 산업의 지속가능성 실적에 대한 기준점을 잡기가 어렵다.[61] 일부 아세안 회원국은 자국의 수요에 맞추어 택소노미를 개발하고 있지만, 회원국 사이에서도 경제활동과 금융상품의 식별에 관하여 소통하고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언어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발표된 아세안 택소노미는 발행자와 투자자가 역내 프로젝트와 경제활동의 지속가능성 영향을 이해하고 정보에 기반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62]

---

58) ACMF는 상장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를 촉진하기 위해 아세안 회원국 거래소들과 협력하면서,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 지속가능성 회계기준 위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 국제 통합보고 위원회(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IIRC)의 국제표준을 참조하고 있다. ACMF, 앞의 문헌(註41), p. 15.

59) ACMF, 앞의 문헌(註41), p. 16.

60) ATB, 앞의 문헌, p. 11.

61) ATB, 앞의 문헌, p. 18. EU-아세안 기업협의회의 크리스 험프리 회장은 아세안 지역에 투자할 만한 기후변화 프로젝트가 부족한 이유는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 녹색이고 무엇이 아닌지 안내하는 체계들이 부적절하게 상호 운용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Karry Lai, “Breaking Down Constraints in Sustainable Finance for Emerging Asian Economies”,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2022. 2. 25., https://www.iflr.com/article/b1wxjjc5t188xs/breaking-down-constraints-in-sustainable-finance-for-emerging-asian-economies 참조.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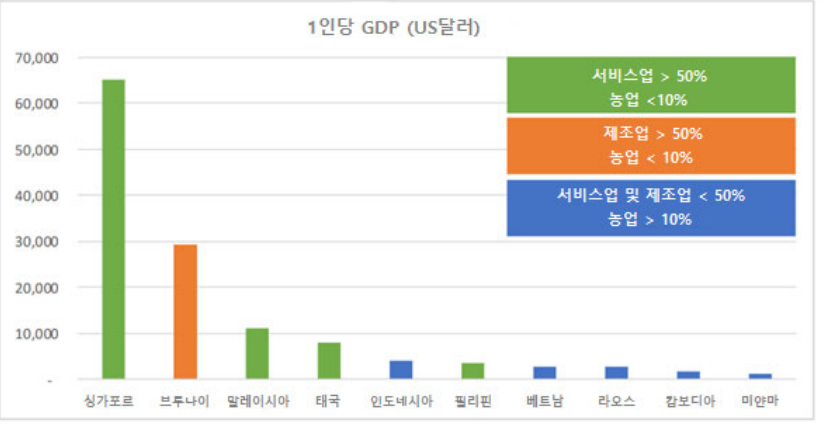

[그림 2] 아세안 회원국의 1인당 GDP 및 산업 구조

아세안 택소노미는 아세안 회원국의 서로 다른 경제, 금융체계, 전환경로를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아래의 5개 상위원칙(high level principle)에 기반하여 개발됐다.[63]

<표 2> 아세안 택소노미의 5개 상위원칙

원칙 1	아세안 택소노미는 모든 아세안 회원국을 위한 지배적 지침으로서, 공통의 언어를 제공하고 개별 회원국의 국내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를 보완한다.
원칙 2	아세안 택소노미는 널리 사용되는 택소노미와 기타 관련 택소노미를 적절히 고려하되, 지속가능한 아세안으로의 정연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토착화한다.
원칙 3	아세안 택소노미는 모든 아세안 회원국에게 포용적이고 유익해야 한다.
원칙 4	아세안 택소노미는 신뢰할 수 있는 틀(정의 포함)을 제공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과학에 기초해야 한다.
원칙 5	아세안 택소노미는 자본시장, 은행, 보험 분야가 채택한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에 부합하거나, 적어도 이에 대립하지 않아야 한다.

62) ATB, 앞의 문헌, p. 19.
63) ATB, 앞의 문헌, p. 20.

www.kci.go.kr

5개 상위원칙은 아세안 택소노미가 지역적 수준에서 회원국의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를 조율하고 그 근본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실제로 아세안 택소노미는 개발 과정에서 기존에 발표된 말레이시아 택소노미와 싱가포르 택소노미(1차 보고서)의 내용을 포괄하고자 했다.[64] ATB는 아세안 택소노미가 아세안 회원국의 공통의 언어와 지배적 지침으로서 이해관계자에게 명확성과 신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자평한다.[65] 국제금융시장협회(이하 'GFMA')는 아세안 택소노미가 등가원리(principles of equivalence)에 따라 서로 다른 관할과 경제의 분열 위험에 대응하면서도 회원국의 국내 택소노미를 포용하려고 했다고 평가했다.[66]

아세안 택소노미는 현지의 여건을 반영하면서도 다른 지역 택소노미와의 호환성을 함께 추구한다.[67] 국제 기관투자자들이 택소노미 사용자의 주된 일부를 구성할 것이라는 점에서 세계 전역의 택소노미들은 서로 조화롭게 맞물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아세안 택소노미는 다른 지역과 유사한 지표(metrics)를 사용하되 역내 환경에 적절한 임계(thresholds)를 적용한다.[68]

---

64) Karry Lai, "ASEAN Supply Chains Pressured to Go Green",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2022. 2. 10., https://www.iflr.com/article/b1wq6nqh1whyxk/asean-supply-chains-pressured-to-go-green 참조.

65) ATB, 앞의 문헌, p. 2.

66) Global Financial Markets Association (GFMA), *GFMA Response to the International Platform for Sustainable Finance's Consultation on Common Ground Taxonomy*, 2021. 12. 21., p. 3.

67) 이와 관련해서 EU가 전세계 택소노미 개발당국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9. 10. 18. 발족한 지속가능금융 국제 플랫폼(이하 'IPSF')에 아세안 주요 회원국인 싱가포르(재무부 및 통화청), 말레이시아(재무부), 인도네시아(재무부)가 가입하여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 정립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IPSF의 창립 회원국은 아르헨티나, 캐나다, 칠레, 중국, 인도, 케냐, 모로코이고, 이후에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세네갈, 싱가포르, 스위스, 영국이 IPSF에 가입했다. 이들 18개 회원국은 온실가스 배출의 55%, 세계 인구의 50%, 글로벌 GDP의 55%를 대변한다. European Commission, "International 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 European Commission 웹페이지,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banking-and-finance/sustainable-finance/international-platform-sustainable-finance_en (2022. 6. 20. 방문) 참조. GFMA는 지속가능금융 택소노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관할당국들의 대화를 촉진하는 IPSF의 노력을 강하게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GFMA, 앞의 문헌(註66), p. 1.

68) Karry Lai, 앞의 칼럼(註61) 참조.

www.kci.go.kr

2. 아세안 택소노미의 성격

아세안 택소노미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69] 아세안 택소노미는 EU 택소노미나 K-택소노미와 달리 특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지 않았다. 「아세안 헌장」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제1조 제9항), 아세안 회원국은 헌장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내법 제정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제5조 제1항), 아세안 택소노미가 아세안 헌장 등에 직접 근거하여 제정된 것은 아니다. 아세안 사무국은 아세안 택소노미의 성격을 ATB를 설립한 4개 아세안 부문별 기구의 공동 이니셔티브로 규정한다.[70] 즉, 아세안 택소노미는 지속가능한 지역으로의 전환에 대한 아세안 회원국의 집단적 공약을 표명한다.[71]

K-택소노미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수립되었다.[72] 다만 K-택소노미 역시 현재로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환경부는 녹색금융과 공시에 택소노미를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73] 이와 달리 EU 택소노미 규칙과 그 위임

---

69) 아세안 택소노미와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 택소노미도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말레이시아 택소노미는 BNM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에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됐다. 금융기관은 말레이시아 택소노미를 활용하여 환경목표를 지원하는 활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입히는 활동에 엄격한 대출 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BNM, 앞의 문헌, p. 24. BNM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에는 인가를 받은 은행, 투자은행, 국제이슬람은행, 이슬람은행, 보험사, 재보험사, 타카풀 운용사, 재타카풀 운용사, 개발신용기관이 포함된다. 말레이시아 택소노미는 BNM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 외에도 기타 금융 분야 이해관계자(자본시장 참여자, 중개기관, 투자분석가 등)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고 밝힌다. BNM, 앞의 문헌, p. 6.

70) ASEAN Secretariat, 앞의 웹페이지(註53) 참조. 아세안 부문별 기구는 아세안 택소노미 이전에도 지속가능금융 이니셔티브를 여럿 발표했는데, ACMF의 아세안 녹색채권 표준, 아세안 사회적채권 표준, 아세안 지속가능채권 표준이 대표적이다. 이들 표준은 ICMA의 녹색, 사회적, 지속가능채권 원칙(특히 4가지 핵심요소인 ① 조달자금의 사용, ②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 과정, ③ 조달자금 관리, ④ 사후보고)의 아세안 역내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ASEAN Capital Markets Forum (ACMF), *ASEAN Green Bond Standards*, 2017. 11. (2018. 10. 개정); *ASEAN Social Bond Standards*, 2018. 10.; *ASEAN Sustainability Bond Standards*, 2018. 10. 참조.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가 2020. 12. 발표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이 ICMA 녹색채권원칙의 4가지 핵심요소에 관한 판단 근거를 제시한다.

71) ASEAN Secretariat, 앞의 웹페이지(註53) 참조.

7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환경적 요소를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는 투자(이하 '환경책임투자')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제10조의4 제1항), 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투자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녹색분류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동조 제2항).

www.kci.go.kr

법령은 유럽연합기능조약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74] EU 택소노미는 비재무 보고지침(NFRD),[75]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76]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칙(SFDR)[77] 등 공시제도와 연계되어 이해관계자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지속가능금융 체계를 구축한다.

아세안 택소노미가 미래에는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존재한다.[78] 아세안 회원국의 상당수가 지속가능성 보고 제도를 이미 도입했으며 국내

---

73) 환경부, 앞의 문헌, p. 7.

74) 규칙(regulation)은 입법적 조치의 한 형식으로서 그 전체로 구속적이며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된다(유럽연합기능조약 제288조). 위임법령(delegated acts)은 비입법적 조치로서 집행위원회는 입법적 조치의 위임에 따라 그 입법적 조치의 비본질적 부분을 보완하거나 수정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비입법적 조치를 채택한다(유럽연합기능조약 제290조 제1항). EU 택소노미 규칙은 2020. 6. 22.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됐으며 같은 해 7. 12. 발효했다. EU 집행위원회는 EU 택소노미 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환경목표별 기술심사기준을 위임법령으로 규정해야 하는데,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목표를 위한 지속가능 활동에 관한 1차 위임법령은 2021. 12. 9. 관보에 게재됐고 2022. 1. 발효했으며, 나머지 목표에 관한 2차 위임법령은 2022년에 공포될 예정이다. European Commission, “EU Taxonomy for sustainable activities”, European Commission 웹페이지,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711 (2022. 5. 16. 방문) 참조.

75) 유럽의회 및 이사회가 2014. 10. 22. 발표한 비재무 보고지침[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EU) 2014/95, NFRD]에 따르면 대규모 공익 회사(상장회사, 은행, 보험회사, 기타 국가기관이 공익단체로 지정한 회사)는 환경 문제, 사회 문제 및 근로자 대우, 인권 존중, 부패방지 및 뇌물, 이사회 다양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European Commission, “EU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uropean Commission 웹페이지,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company-reporting-and-auditing/company-reporting/corporate-sustainability-reporting_en (2022. 2. 28. 방문) 참조.

76) EU 집행위원회는 NFRD를 개정하는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초안을 2021. 4. 21. 채택했다. 이는 보고대상의 범위를 모든 대기업과 규제 시장의 모든 상장회사(초소형 상장회사 제외)로 확대하고, 보고정보의 감사를 요구하며, 더욱 상세한 보고의무와 EU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에 따른 보고의무를 도입하고, 보고정보의 디지털 태그를 요구한다. European Commission, 앞의 웹페이지(註75) 참조.

77) 유럽의회 및 이사회가 2019. 11. 29. 제정한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칙[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EU) 2019/2088/EU, SFDR]은 금융시장 참여자(자산운용사, 기관투자자, 보험회사, 연기금 등)와 금융자문사에게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 European Commissi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European Commission 웹페이지,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banking-and-finance/sustainable-finance/sustainability-related-disclosure-financial-services-sector_en (2022. 2. 28. 방문) 참조.

78) 기후변화에 관한 아시아 투자자 그룹(이하 ‘AIGCC’)의 레베카 미쿨라-라이트 CEO는 의무적 기후위험 공시요건이 아시아 전역에 걸쳐 빠르게 도입되고 있으므로 아세안 택소노미 역시 의무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예상했다. Karry Lai, “PRIMER: ASEAN Taxonomy for

www.kci.go.kr

택소노미를 개발하는 등 기후대응 관련 체계를 정립하고 있으므로, 향후 아세안 택소노미가 회원국의 국내 규범과 연계되어 구속력을 가지게 될 것인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세안 택소노미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면 그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기업 수준보다 세부적인) 경제활동 수준에서 공개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79]

Ⅳ. 아세안 택소노미의 내용

아세안 택소노미는 다층 구조로 설계되어 경제활동을 기반체계(Tier 1)와 추가표준(Tier 2)의 두 가지 Tier를 사용해 분류한다. 또한 경제활동을 녹색, 황색, 적색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는 신호등 체계를 도입했다. 이 장에서는 다층 구조와 신호등 체계의 도입 취지와 규범적 의의를 검토하고, 아세안 택소노미의 기반체계와 추가표준이 각각 경제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설명한다.

1. 다층 택소노미

아세안 택소노미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평가하는 기반체계와 추가표준의 두 가지 Tier로 구성된 다층 택소노미이다. 기반체계는 발전수준이 상이한 회원국과 이해관계자가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반면에, 추가표준은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회원국과 이해관계자에게 경제활동별 기술심사기준을 제공한다.[80] 아래의 그림은 기반체계와 추가표준으로 설계된 다층 택소노미의 구조를 보여준다.[81]

Sustainable Finance − Version 1",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2022. 1. 7., https://www.iflr.com/article/b1w6rt1bbkbwr8/primer-asean-taxonomy-for-sustainable-finance-version-1 참조.

79) Karry Lai, 앞의 칼럼(註78) 참조.

80) ASEAN Secretariat, 앞의 웹페이지(註53) 참조.

81) ATB, 앞의 문헌, p. 21.

www.kci.go.kr

[그림 3] 다층 택소노미 설계

www.kci.go.kr

기반체계는 모든 분야의 경제활동을 단일한 결정트리에 따라 녹색 FF, 황색 FF, 적색 FF(FF는 기반체계, 즉 Foundation Framework의 약자)로 분류한다. 한편 추가표준은 집중분야(및 구현분야)에 속한 경제활동을 구체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녹색 PS, 황색 PS, 적색 PS(PS는 추가표준, 즉 Plus Standard의 약자)로 분류한다. 환경목표와 필수기준에 따라 경제활동을 평가하는 기반체계는 말레이시아 택소노미(이는 아래에서 설명한다)와 상당히 유사하다. 추가표준은 특정 분야의 경제활동을 활동별 기술심사기준에 근거하여 분류한다는 점에서 EU 택소노미, K-택소노미, 싱가포르 택소노미(안)와 흡사하다.

다층 택소노미는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구조로서 기후변화 대응에서 아세안 내부의 긴장 관계를 반영한다. 택소노미가 기준을 너무 높게 잡으면 이에 도달하기 어려운 회원국들은 택소노미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고, 반대로 기준을 너무 낮게 잡으면 자기만족과 그린 워싱을 부추기며 기후변화 대응에 실패할 수 있다.[82] ATB는 기술심사기준의 개발과 적용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회원국과, 역내 고용의 69%, GDP의 4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포용하기 위해 다층 택소노미를 설계했다고 밝힌다.[83] AFMGM은 다층 구조의 포용성과 실용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원칙에 기초한 기반체계는 아세안 회원국이 개별적 상황을 반영하여 지속가능성 의제를 실현하도록 돕고, 추가표준은 과학에 기초한 지표와 임계를 제공하여 파리협정상 목표를 추구하도록 지원한다고 언급했다.[84]

아세안 택소노미는 K-택소노미의 적합성 판단 프로세스[85]와 유사한 추가표준에 더하여, 모든 분야의 경제활동에 단일한 결정트리를 적용하는 기반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K-택소노미와 뚜렷하게 구별된다. 기반체계는 특정 분야가 아닌 모든 분야의 경제활동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K-택소노미보다 넓은 범위의

82) Sharon Seah, 앞의 칼럼 참조.

83) ATB, 앞의 문헌, pp. 48-49 참조.

84) AFMGM, 앞의 문헌(註56), para. 24.

85) K-택소노미는 경제활동이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① 활동기준, ② 인정기준, ③ 배제기준, ④ 보호기준 충족 여부를 순차적으로 판단한다. '활동기준'은 경제활동이 활동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인정기준'은 경제활동이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배제기준'은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 판단기준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보호기준'은 경제활동이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를 각각 판단한다. 환경부, 앞의 문헌, p. 13.

www.kci.go.kr

경제활동을 포괄할 수 있고, 기술적 심사기준보다 적용이 용이한 결정트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과 같은 이해관계자들을 분류체계에 편입할 수 있다.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엄밀한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한다는 택소노미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폭넓은 경제활동과 이해관계자를 포용할 수 있는 다층 구조의 긍정적인 측면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아세안 택소노미의 다층 구조는 글로벌 택소노미의 모델 정립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EU 택소노미가 높은 입상도(granularity) 수준으로 녹색경제활동의 판단기준을 선제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지만, 대다수의 개발도상국은 이처럼 심화된 기준을 곧바로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아세안은 개발 수준이 상이한 국가들의 연합체이다 보니 모든 회원국의 상황과 수요를 감안하여 타협적인 성격의 택소노미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점에서 아세안 택소노미의 다층 구조는 전 세계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택소노미의 한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단일한 글로벌 택소노미의 실현 가능성은 낮을 수 있겠으나, 향후 여러 국가들이 택소노미의 상호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대화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아세안 택소노미의 다층 구조는 중요한 사례로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신호등 체계

아세안 택소노미는 경제활동을 녹색, 황색, 적색으로 분류하는 신호등 체계를 도입했다. 이는 아세안 회원국인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기존 택소노미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말레이시아 택소노미는 지도원칙(Guiding Principles)[① 기후변화 완화(지도원칙 1), ② 기후변화 적응(지도원칙 2), ③ 환경에 심각한 피해가 없을 것(지도원칙 3), ④ 전환을 위한 개선 노력(지도원칙 4)]에 따라 경제활동을 기후지원(Climate Supporting), 전환(Transitioning), 감시(Watchlist)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한다.[86] 여기에서 전환은 아세안 택소노미의 황색에 해당하는 범주이다. 아

86) BNM, 앞의 문헌, p. 23.

www.kci.go.kr

래에 정리한 말레이시아 택소노미의 경제활동 분류체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금융기관은 중단기적으로 환경에 피해를 초래하지만 저탄소의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의 활동을 전환으로 분류할 수 있다.[87]

<표 3> 말레이시아 택소노미의 경제활동 분류체계

분류		경제 활동 (거래 수준)		전체 사업	
		지도원칙 1(GP1)	지도원칙 2(GP2)	지도원칙 3(GP3)	지도원칙 4(GP4)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환경에 심각한 피해가 없을 것	전환을 위한 개선 노력
기후지원	C1	GP1 또는 GP2 또는 모두		O	N/A
전환	C2	GP1 또는 GP2 또는 모두		X	O
	C3	X		X	O
감시	C4	GP1 또는 GP2 또는 모두		X	X
	C5	X		X	X

싱가포르 택소노미(안)은 택소노미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중간적 조치로서 녹색, 황색, 적색의 신호등 체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88] 특히 황색 범주에는 현재로서는 탄소중립 경로를 따르지 않지만 ① 녹색 전환경로를 따르는 제한된 기간 동안의 활동(대안적 기술이 존재하는 경우)과 ② 단기적으로 상당한 탄소저감을 가능하게 하는 일몰 시점이 규정된 활동(가능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철강, 시멘트와 같은 경우)이 포함된다.[89] 황색 범주는 기존 인프라 및 활동의 전환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90]

아세안 회원국은 대부분 저소득·중소득 국가에 해당하며, 이들 국가의 당면과제는 경제 성장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고배출 산업에서 저배출 산업으로 전환하

87) BNM, 앞의 문헌, p. 23.

88) GFIT는 싱가포르 택소노미의 접근방식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녹색산업지도목록과 EU 택소노미를 섞어놓은 것이라고 밝힌다. 싱가포르 택소노미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표는 EU 택소노미가 사용하는 그것에 더욱 가깝고 임계와 기준은 아세안에 적합한 수준으로 설정된 구체적인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GFIT, 앞의 문헌(註16), pp. 55-56.

89) GFIT, 앞의 문헌(註16), p. 54 및 GFIT, 앞의 문헌(註45), p. 50.

90) GFIT, 앞의 문헌(註45), p. 50.

www.kci.go.kr

는 것이다. 아세안 택소노미는 녹색 외에 황색의 범주를 추가함으로써 환경목표 달성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전환 활동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반영했다. 또한 녹색과 황색의 범주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환경목표 기여도에 따라 경제활동을 분류한다는 택소노미의 취지를 살리고자 했다.

아세안 지역의 택소노미가 경제활동을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택소노미는 특정 경제활동이 녹색인지 아닌지를 이분법적으로 판단한다. K-택소노미는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인 녹색부문과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으로 볼 수는 없지만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과정으로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인 전환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91] 즉, 과도기적 경제활동을 황색으로 분류하는 방식 대신에, 이를 전환부문에 포함하면서 녹색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처럼 전환부문에 편입된 경제활동을 녹색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린 워싱을 방지한다는 택소노미의 취지를 훼손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92] 아세안 택소노미의 신호등 체계는 K-택소노미의 이분법적 체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속가능금융 플랫폼(이하 'PSF')[93]이 EU 택소노미가 녹색으로 판단되지 않은 활동은 전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활동이라는 이분법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94] 황색과 적색의 범주를 추가해서 유럽 경제의 전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권고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만하다.[95] PSF는 전체 금융자산 중에서 택소노미 부합 자산(택소노미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면서 녹색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자산)의 비중이 5%에 그치므로,[96]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상당히 기여하는 활동은 녹색으로, 중간적 성과를 내는 활동은 황색으로, 심각한 환경 피해를 초래하는 활동은 적색으로 분류하는 신호등 체계를 도입

91) 환경부, 앞의 문헌, 10-11면.

92) 기후솔루션 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문, 2021. 11. 30., 1-2면.

93) PSF는 EU 택소노미 규칙 제20조에 따라 설립되어 EU 집행위원회의 지속가능금융 정책(EU 택소노미 포함) 개발을 지원하는 전문가 집단이다.

94) EU 택소노미 규칙은 지속가능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활동의 범주를 녹색, 구현(제16조), 전환(제10조 제2항)의 세 가지로 규정한다. GFIT, 앞의 문헌(註45), p. 48.

95) 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 (PSF), *The Extended Environmental Taxonomy: Final Report on Taxonomy extension options supporting a sustainable transition*, 2022. 3., pp. 17-27 참조.

96) PSF, 앞의 문헌(註95), p. 17.

www.kci.go.kr

함으로써 택소노미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97] 이러한 지적은 경제활동을 녹색과 비녹색으로 구분하는 K-택소노미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K-택소노미가 신호등 체계를 도입한다면 폭넓은 경제활동을 환경목표 기여도에 따라 명확히 평가하는 분류체계로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3. Tier 1: 기반체계

기반체계에서 경제활동은 적어도 하나의 환경목표와 모든 필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98] 이는 모든 분야의 경제활동에 적용되는 단일한 결정트리에 따라 평가된다. 또한 경제활동은 아세안 회원국이 제정한 국내 환경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99] 아래에서는 다층 택소노미의 Tier 1인 기반체계와 관련하여 환경목표, 필수기준, 결정트리, 최소한의 보호장치에 대해 설명한다.

(1) 환경목표

아세안 택소노미의 4대 환경목표는 ① 기후변화 완화, ② 기후변화 적응, ③ 건강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호, ④ 자원탄성 촉진과 순환경제 전환이다.[100] 경제활동이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지 여부는 아래에 정리된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101]

97) PSF, 앞의 문헌(註95), pp. 23-27.
98) ATB, 앞의 문헌, p. 22.
99) 아세안 택소노미는 국내 환경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규정하면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ATB, 앞의 문헌, p. 23. 아세안 택소노미 부록 F는 아세안 회원국이 제정한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법제의 목록을 제시한다. ATB, 앞의 문헌, pp. 63-65 참조.
100) ATB, 앞의 문헌, p. 23.
101) ATB, 앞의 문헌, pp. 23-28.

www.kci.go.kr

<표 4> 아세안 택소노미의 환경목표 판단기준[102)]

환경목표	기준
기후변화 완화	[아래 기준의 하나 이상에 상당히[103)] 기여하는 활동] 1. 온실가스 배출 방지 2. 온실가스 배출 감축 3. 타인의 온실가스 배출 방지·감축을 가능하게 함
기후변화 적응	[아래 기준을 하나 또는 전부 충족하면서, 다른 이해관계자의 적응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물리적 위험을 증대시키지 않는 활동] 1. 자기 조직의 기후변화 탄성을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함 2. 다른 이해관계자가 기후변화 탄성을 증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건강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호	[아래 기준을 일부 또는 전부 충족하는 활동] 1. 생태계 복원을 가능하게 하거나 생태계 보호를 용이하게 함 2.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행함 3. 토양침식과 수로로의 지표유출을 방지함 4. 자연구역 보호와 관련된 기존 정책을 집행하고 강화함 5. 지속가능한 벌목방식을 채택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된 삼림에서 목재료를 조달함 6.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에 규정된 목적(생물다양성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한 배분)을 달성함 7. 사업 결정 과정에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의 공정한 사용을 고려함 8. 오염방지 메커니즘을 실행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함 9. 단·장기 수명의 기후 오염원 배출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함 10. 유해·비유해 폐기물 생산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함 11. 살충제 사용과 관련된 위험과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리함

102) 아세안 택소노미의 기반체계가 말레이시아 택소노미로부터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방증하듯이, 기후변화 완화와 기후변화 적응에 대해 아세안 택소노미가 설정한 기준은 말레이시아 택소노미가 각 지도원칙에 대해 설정한 기준과 동일하다. BNM, 앞의 문헌, pp. 12-16. 그러나 말레이시아 택소노미는 기후변화 완화와 기후변화 적응만을 지도원칙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여기에 더해 생물다양성 보호와 순환경제 전환을 환경목표로 규정하는 아세안 택소노미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싱가포르 택소노미(안)은 말레이시아 택소노미가 광범위한 환경 지속가능성보다는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한다. GFIT, 앞의 문헌(註16), p. 12. 다만 말레이시아 택소노미는 심각한 피해가 없을 것의 지도원칙을 통해 광범위한 환경 문제(오염, 생물다양성, 자원효율 등)를 고려한다고 자평한다. BNM, 앞의 문헌, p. 5.

www.kci.go.kr

환경목표	기준
자원탄성 촉진과 순환경제 전환	[아래 기준을 하나 또는 전부 충족하는 활동] 1. 원자재, 에너지, 물, 기타 천연자원의 보전을 위해 사업 운영을 조정함 2. 적응 상품, 생산, 기술, 공정을 통해 순환경제 원칙을 실행함

아세안 택소노미가 이처럼 4대 환경목표를 설정한 것은 싱가포르 택소노미(안) 1차 보고서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싱가포르와 아세안의 정책적 맥락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생물다양성 보호, 자원탄성 촉진을 4대 환경목표로 제안한다고 밝히는데, 이러한 환경목표는 아세안 택소노미와 거의 동일하다.[104)]

EU 택소노미와 K-택소노미는 환경목표를 6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로 세분한다.[105)] 비록 환경목표의 개수는 서로 다르지만, 아세안 택소노미의 4대 환경목표가 EU와 한국의 환경목표보다 포괄적으로 설정돼 있어서 이들은 대체로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106)]

---

103) 아세안 택소노미의 해석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 택소노미는 특정 활동이 기후변화 완화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판단되려면 해당 활동의 긍정적 영향이 잠재적인 그린 워싱을 방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중대해야 한다고 부연한다는 점을 참조할 만하다. BNM, 앞의 문헌, p. 12, note 16.

104) GFIT, 앞의 문헌(註16), pp. 22-23. 다만 아세안 택소노미가 발표된 후에 공개된 싱가포르 택소노미(안) 2차 보고서는 기존 4대 환경목표의 표현을 아세안 택소노미와 더욱 유사하게 변경하면서(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건강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호, 자원탄성 및 순환경제 촉진) 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추가하여 5대 환경목표를 설정했다. GFIT, 앞의 문헌(註45), p. 14.

105) EU 택소노미의 경우에는 EU 집행위원회가 유럽의 환경정책에 기초해 6대 환경목표를 설정했고, 이를 EU 택소노미를 설계하는 기술실무그룹에 전달했다. GFIT, 앞의 문헌(註16), p. 18. K-택소노미는 EU 택소노미 등 국제 동향의 6대 환경목표를 준용했다고 밝힌다. 환경부, 앞의 문헌, 9면.

106) Mark Uhrynuk & Alexander W. Burdulia, "ASEAN Releases Sustainability Taxonomy for Southeast Asia", Mayer Brown 웹페이지, 2021. 11. 24., https://www.eyeonesg.com/2021/11/asean-releases-sustainability-taxonomy-for-southeast-asia/ 참조.

www.kci.go.kr

(2) 필수기준

아세안 택소노미의 2개 필수기준은 ① 심각한 피해가 없을 것(Do No Significant Harm, DNSH)과 ② 전환을 위한 개선 노력(Remedial Efforts to Transition)이다. 심각한 피해가 없을 것 또는 DNSH 원칙이란 하나의 환경목표에 상당히 기여하는 경제활동은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107] 전환을 위한 개선 노력은 ⓐ 기후·환경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행위는 처음부터 위기와 영향을 예측하고 방지해야 하며, ⓑ 방지가 불가능하다면 위기와 영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최소화하고 절감해야 한다는 요건이다.[108]

아세안 택소노미가 필수기준으로 전환을 위한 개선 노력을 요구하는 것은 말레이시아 택소노미를 본받은 것이다. 말레이시아 택소노미는 전환을 위한 개선 노력을 지도원칙 중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당장은 기후변화 목표에 기여하지 않거나 지속가능하지 않은 경제활동을 택소노미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순차적인 전환을 도울 수 있다고 설명한다.[109]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PSF가 EU 택소노미의 문제점으로 녹색이 아닌 활동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이분법적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3) 결정트리

기반체계는 경제활동을 기술심사기준이 아닌 결정트리에 따라 판단한다. 아세안 택소노미 버전 1은 4대 환경목표 중에서도 기후변화 완화에 초점을 맞추어 아래와 같이 결정트리를 설계했다.[110]

107) ATB, 앞의 문헌, p. 28.
108) ATB, 앞의 문헌, p. 28.
109) BNM, 앞의 문헌, p. 18.
110) ATB, 앞의 문헌, p. 42.

www.kci.go.kr

[그림 4] 기반체계의 결정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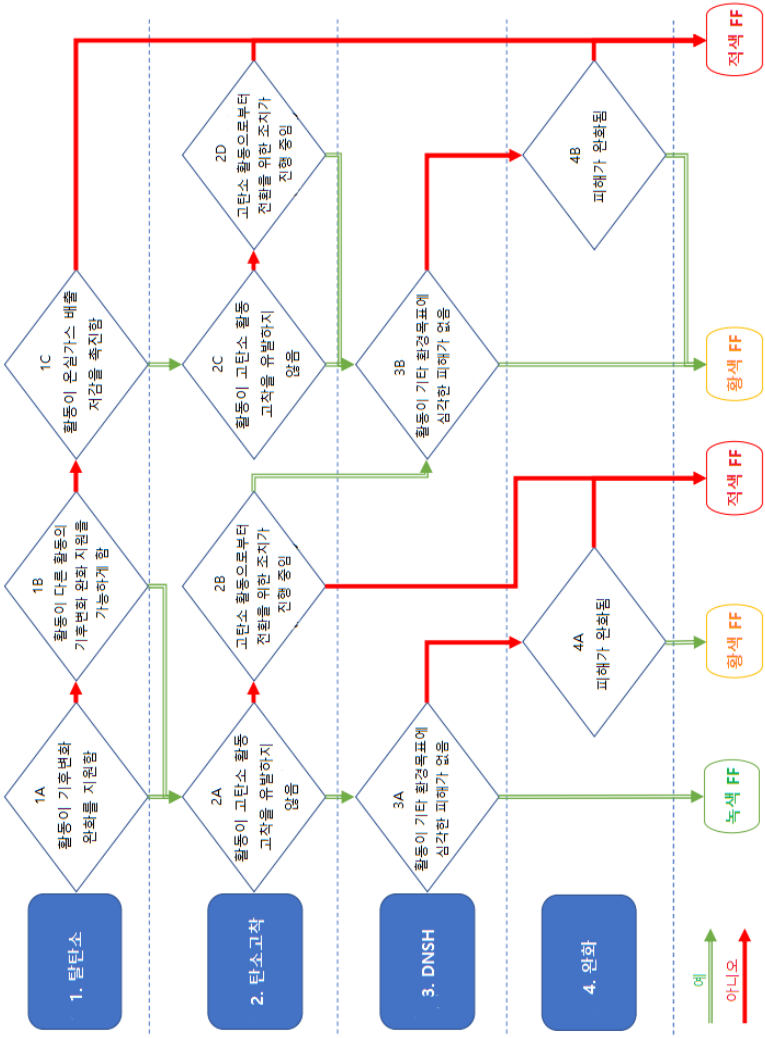

www.kci.go.kr

결정트리에 따르면 특정 경제활동이 4대 환경목표 중의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활동이 다른 환경목표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녹색 FF로 분류되고, 다른 환경목표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개선 조치를 통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완화한다면 황색 FF로 분류된다. 환경목표에 기여하지 않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활동은 적색 FF로 평가된다. 기후변화 완화를 중심으로 작성된 아세안 택소노미 버전 1은 녹색 FF, 황색 FF, 적색 FF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111]

녹색 FF	기후변화 완화에 분명히 기여하거나 이를 가능하게 하는 활동
황색 FF	탈탄소에 기여하지만 다른 환경목표에 대한 피해가 완화되어야 하는 활동
적색 FF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지 않거나 이를 가능하게 하지 않는 활동 (그리고/또는) 다른 보호장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활동

ATB는 결정트리의 평가 수준을 높이기 위해 환경목표와 필수기준에 관한 안내 질문(guiding questions)을 발전시키는 것이 다음 단계의 과제라고 언급한다.[112] 아세안 택소노미 버전 1의 결정트리가 모든 분야의 경제활동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과 달리, 다음 버전에서는 집중분야(추가표준이 적용되는 분야를 의미하는데, 이는 아래에서 설명한다)를 유사성에 따라 4개의 버킷(① 에너지 및 운송, ② 물 및 폐기물, ③ 건물/건설 및 제조, ④ 기타 분야)으로 묶고 각 버킷마다 최적화된 결정트리를 설계할 계획이다.[113] 아세안 택소노미는 부록에서 '에너지 및 운송', '물 및 폐기물', '건물/건설 및 제조'의 버킷에 적용할 수 있는 결정트리 용법을 일부 제안한다.[114] 이를 살펴보면 결정트리가 앞으로

111) ATB는 아세안 택소노미 버전 1의 결정트리가 기후변화 완화에 기반하기는 했지만, 다른 환경목표 역시 DNSH와 관련된 결정노드에서 고려된다고 밝힌다. ATB, 앞의 문헌, p. 42.

112) ATB, 앞의 문헌, p. 83.

113) 예를 들어 에너지 및 운송 분야에는 이미 탄소중립 기술이 가용하고 명백한 녹색활동(재생에너지, 배기구 무배출 차량)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활동은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한 활동과 구분될 수 있다. 반면에 제조 및 건설 분야는 기반체계를 통해 녹색으로 분류될 수 있는 탄소중립 기술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용한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는 건물 및 제조 공정에 대한 효율성 투자를 통해 배출을 저감해야 한다. 농업 및 토지사용 분야는 다른 분야와 함께 묶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분야의 활동은 공급망을 세부적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결정트리가 아닌 추가표준을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 ATB, 앞의 문헌, pp. 83-84.

www.kci.go.kr

어떻게 운용될 것인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에너지 및 운송 버킷에 대한 제안적 결정트리 용법을 아래에 발췌한다.

<표 5> 제안적 결정트리 용법 (에너지 및 운송 버킷의 경우)

결정노드	버킷 1 (에너지 및 운송)
1A	예시: (‘예’) 운송 – 전동화 운송 대안 (예: 전기자동차) / 에너지 – 화석연료에 대한 저탄소 대안 (‘아니오’) 필수적이지만 대체재가 없으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탈탄소가 필요한 활동을 포괄 (예: 항공)
1B	2030년까지 상당한 배출 저감을 지원하는 활동 예시: (‘예’) 재생에너지를 위한 개선된 제어 또는 송배전 절차
1C	예시: (‘예’) 비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사용하는 전기 대중교통
2A	예시: (‘아니오’) 화석연료 운송
2B	예시: (‘예’) 재생에너지로의 계획된 전환
2C	예시: (‘아니오’) 전기자동차 활용의 저해
2D	예시: (‘예’) 재생가능한 전기자동차로의 계획된 전환
3A	예시: (‘아니오’) 지역 오염 또는 생물종 서식지 파괴
3B	
4A	예시: (‘예’) 근원에서의 배출 저감
4B	

아세안 택소노미는 결정트리에 포함된 안내 질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결정노드 1A에서는 경제활동의 기후변화 완화 지원 여부를 평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측정해야 하는지, 측정한다면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115] 위에

114) ATB, 앞의 문헌, p. 85.

115) 아세안 택소노미의 기반체계가 영향을 받은 말레이시아 택소노미는 기후변화 완화 지도원칙에 대해 설명하면서, 재생에너지나 에너지 효율 기술과 관련된 활동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제금융기구(IFI)의 접근방식[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해 GHG 프로토콜,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VCS(Verified Carbon Standard), GS(Gold Standard), EU 배출권 거래제, ISO 14064, 기타 국제표준과 같은 방법론을 사용]을 사용해서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분야(LULUCF)의 토지 기반 탄소 저장 및 흡수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는 LULUCF GHG 프로토콜, IPCC의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가이드라인, CDP 보고 프레임워크를 참조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BNM, 앞의 문헌, p. 13 및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IFIs - Harmonization of Standards for GHG accounting”,

www.kci.go.kr

발췌한 제안적 결정트리 용법을 살펴보면 아세안 택소노미가 향후 결정트리에 대해 정량적인 평가기준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정노드의 이진법적인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라고 답변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의 탈탄소 기여, DNSH, 전환 노력 등이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관계자들이 결정트리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의적으로 적용할 위험이 있다. 기반체계에서 녹색 FF로 평가받은 경제활동이 투자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결정트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점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쌓여야 할 것이다.

(4) 최소한의 보호장치

아세안 택소노미는 곳곳에서 보호장치 또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는 경제활동이 회원국 국내 환경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일 뿐이고,[116] EU와 한국의 택소노미가 녹색경제활동에 요구하는 인권, 노동 등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minimum safeguard)와 다른 개념이다.

EU 택소노미와 K- 택소노미는 ① 환경목표에 기여(기술심사기준으로 판단)하고 ②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으며 ③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준수하는 활동을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한다.[117] 이때 최소한의 보호장치에 관하여, K-택소노미는 녹색경제활동이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한다.[118] EU 택소노미는 최소한의 보호장치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데,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119]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UNFCCC 웹페이지 (2022. 6. 8. 방문), https://unfccc.int/climate-action/sectoral-engagement/ifis-harmonization-of-standards-for-ghg-accounting 참조.

116) ATB, 앞의 문헌, p. 23.

117) EU 택소노미 규칙 제3조 및 환경부, 앞의 문헌, 9면 참조.

118) 환경부, 앞의 문헌, 9면.

119)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주요 분야별 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 정책: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발전에 기여. ② 고용 및 노사관계: 근로자의 권리 존중, 아동노동 및 강제노역 금지에 기여. ③ 환경: 환경개선 목표설정 등을 포함한 환경경영 체계 수립 및 유지. ④ 소비자 보호: 공정한 영업, 마케팅 및 광고 등의 관행을 준수하여 행동. ⑤ 과학 및 기술: 기업의 활동이 진출국의 과학기술 정책 및 계획과 합치하고 아울러 국가 및 지역의 혁신 역량 배양에 적절히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산업통상자원부 외,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및 NCP 활용 가이드, 2020, 2면.

www.kci.go.kr

원칙」,[120]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이 정한 8대 핵심협약[121]에 규정된 원칙과 권리, 국제인권장전[122]이 그것이다(EU 택소노미 규칙 제18조 제1항).

아세안 택소노미가 인권, 노동 등과 관련된 법규의 준수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역내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택소노미와도 다른 점이다. 싱가포르 택소노미(안)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한 네 가지 요건으로 ①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에 기여할 것, ②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가 없을 것, ③ 공동체의 사회적, 경제적 웰빙에 부정적 영향이 없을 것, ④ 국내법(예: 환경보호 관리법)을 준수할 것을 규정한다.[123] 여기에서 '공동체의 사회적, 경제적 웰빙에 부정적 영향이 없을 것'은 EU와 한국 택소노미의 최소한의 보호장치와 유사한 요건이다. 싱가포르 택소노미는 해당 요건의 참조기준으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예로 든다.[124]

말레이시아 택소노미의 경제활동 분류체계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4개 지도원칙(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환경에 심각한 피해가 없을 것, 전환을 위한 개선

---

120)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내용은 크게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구제책에 대한 접근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관하여서는 ① 정책 서약, ② 인권 실사, ③ 개선, ④ 사업환경 이슈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규정한다.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 OHCHR),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2011, pp. 16-26.

121) 국제노동기구 8대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분야의 「제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 협약」과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강제노동금지 분야의 「제29호 강제노동 협약」과 「제105호 강제노동철폐 협약」, 차별금지 분야의 「제100호 동등보수 협약」과 「제111호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 아동노동금지 분야의 「제138호 최저연령 협약」과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이다.

122) 「세계인권선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B규약)」을 함께 국제인권장전이라고 부른다.

123) GFIT, 앞의 문헌(註16), pp. 22-23.

124) 싱가포르 택소노미(안) 1차 보고서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참조기준으로 나열했고, 2차 보고서는 여기에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추가했다. GFIT, 앞의 문헌(註19), p. 23 및 GFIT, 앞의 문헌(註45), p. 107. 이밖에도 싱가포르 택소노미(안)은 산업별로 특수한 위험 관리와 우수 사례를 정의하기 위해 DNSH와 최소한의 보호장치 외에도 국제 공인 표준 및 자격을 사용할 실익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분야별 국제 공인 표준 및 자격의 목록을 제시한다. GFIT, 앞의 문헌(註16), pp. 59-68.

www.kci.go.kr

노력)에 기반하지만, 금지활동(지도원칙 5)이라는 또 하나의 지도원칙을 규정하고 있다.[125] 이는 금융기관에 대해 경제활동이 국내 환경법을 위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이 국내 인권 및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것을 강하게 권고하는 지도원칙이다.[126] 다만, 말레이시아 택소노미의 경제활동 분류체계는 금지활동의 지도원칙을 직접 반영하지 않으므로[127] 인권 및 노동법을 위반한 기업의 경제활동도 기후지원(아세안 택소노미의 녹색에 해당)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아세안 택소노미가 인권, 노동 등의 측면에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일부 회원국의 열악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U와 싱가포르 택소노미가 정한 판단기준 중의 하나인 국제노동기구 8대 핵심협약을 기준으로 보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8개 협약을 모두 비준했지만, 베트남(7개), 태국(6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라오스(5개), 미얀마(4개), 브루나이(2개)는 그중 일부만을 비준한 상태이다.[128] 2018년 세계노예지수에 따르면 캄보디아, 미얀마, 브루나이, 라오스 등의 아세안 회원국에서 현대 노예제의 유행성과 취약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129] 특히 아세안 택소노미가 집중분야로 선정한 농업 및 제조업 분야에서 이러한 위험이 빈번하게 발생한다.[130]

「아세안 헌장」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아세안 헌장 제1조 제7항). 아세안 택소노미가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면서도 인권과 노동에 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아세안 헌장의 정신과 의무에 배치된다. 또한 다른 지역의 택소노미뿐만 아니라 역내 회원국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사례와도 격리되어, 아세안 택소노미가 의도하는 국제투자 유치에 장애가 될 수 있다. ATB는 아세안 택소노미가 버전을 거듭할수록

125) BNM, 앞의 문헌, pp. 12-21 참조.
126) BNM, 앞의 문헌, p. 21.
127) BNM, 앞의 문헌, p. 23.
128)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Ratifications of fundamental Conventions by country”, ILO 웹페이지, https://www.ilo.org/dyn/normlex/en/f?p=1000:10011:10853707103781:::P10011_DISPLAY_BY:1 (2022. 2. 9. 방문) 참조.
129) Walk Free Foundation, *The Global Slavery Index 2018*, 2018, pp. 86-91 참조.
130) Alex Burdulia, “Environmental Issues Take Precedence in ASEAN’s Sustainable Finance Taxonomy”, *The Diplomat*, 2022. 1. 12., https://thediplomat.com/2022/01/environmental-issues-take-precedence-in-aseans-sustainable-finance-taxonomy/ 참조.

www.kci.go.kr

지속가능성의 다른 측면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으므로,[131] 후속 버전은 인권과 노동에 관한 문제를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택소노미 역시 비교법적 측면에서 보완의 여지가 있다. K-택소노미가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녹색경제활동이 준수할 원칙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세안 택소노미보다 나은 점이다. 그러나 K-택소노미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충족하려면 경제활동이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처럼 국내법을 판단기준으로 삼는 태도는 말레이시아 택소노미와 비슷한 수준이다. 가령 싱가포르 택소노미는 '국내법을 준수할 것'과 '공동체의 사회적, 경제적 웰빙에 부정적 영향이 없을 것'을 별도의 요건으로 구분하고 있다. K-택소노미 역시 단순히 위법 여부를 묻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활동이 환경목표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경제적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형량하고, 환경목표에 상당히 기여하더라도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고 공동체의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투자를 권고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132] 이때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싱가포르와 EU의 택소노미가 열거하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과 같은 연성법 규범과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국제인권장전 등의 조약을 참조한다면 택소노미 간의 호환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4. Tier 2: 추가표준

추가표준은 특정한 분야의 경제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아세안 역내의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다른 시작점에 놓여있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복수의 탄소배출 저감경로로 구성된 적층식 임계를 설정한다. 아래에서는 다층 택소노미의 Tier 2인 추가표준과 관련하여 적용분야, 심사기준 개발지침, 탄소배출 저감경로, 적층식 임계에 관해 설명한다.

---

131) ATB, 앞의 문헌, p. 3.

132) PSF는 최소한의 보호기준을 규정하는 EU 택소노미 규칙 18조의 목적이 노동권 등 인권, 부패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세법 불이행이나 불공정행위에 연결된 녹색 투자가 '지속가능'하다고 간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다. Platform on Sustainable Development (PSF), *Draft Report on Minimum Safeguards*, 2022. 7., p. 5.

www.kci.go.kr

(1) 적용분야

(가) 집중분야

아세안 택소노미 버전 1은 기후변화 완화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적, 경제적 중요성을 형량하여 집중분야를 선정했다. 환경적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경제적 기준으로 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GVA)를 설정했으며, 온실가스 배출은 기후분석지표도구(Climate Analysis Indicators Tool, 이하 'CAIT')의 자료를, 총부가가치는 국가통계기관의 자료를 사용했다.[133] 2018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제표준산업분류(이하 'ISIC')[134]상 아래의 분야가 집중분야로 선정됐다. 이들 집중분야는 아세안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85%,[135] GVA의 55%를 차지한다.[136]

<표 6> 추가표준의 집중분야

순위	ISIC 코드	분야	온실가스 배출 (Mt CO2eq)	GVA (%)
1	A	농업, 임업 및 어업	1,552	7.57
2	C	제조업	501	21.66
3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712	2.09
4	H	운수 및 창고업	386	3.67
5	F, L	건설업 & 부동산업	64	6.49
6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12	0.53

이처럼 아세안 택소노미의 추가표준이 환경과 경제를 기준으로 집중분야를 선택한 것은, 싱가포르 택소노미(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137] 싱가포르

133) ATB, 앞의 문헌, p. 33.

134) 아세안 회원국은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ISIC)에 근거하여 자국의 국가표준산업분류를 개발했다. ATB, 앞의 문헌, p. 31. 우리나라와 유럽도 각각 ISIC에 근거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EU경제활동통계분류(nomenclature statistique des activités économiques dans la Communauté européenne, NACE)를 제정했다. ATB, 앞의 문헌, p. 69 참조. 아세안 택소노미는 아세안 회원국의 국가표준산업분류 및 다른 주요 택소노미에서 사용된 산업분류와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ISIC에 기초하여 추가표준의 집중분야를 선택했다고 밝힌다. ATB, 앞의 문헌, p. 31.

135) 85%라는 수치는 CAIT의 분야별 보고자료(광업 등 분야 자료는 부재)에 근거한 추산치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ATB, 앞의 문헌, p. 37, note 12.

136) ATB, 앞의 문헌, pp. 33-37 참조.

www.kci.go.kr

택소노미 역시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기후변화 기여도와 경제활동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야를 선정했다.[138] 싱가포르 택소노미의 적용분야는 아세안 택소노미의 6개 집중분야에서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을 제외(이는 구현분야에 일부 포함)한 나머지 5개 분야와 대체로 일치한다.

(나) 구현분야

추가표준은 집중분야뿐만 아니라 구현분야(enabling sector)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구현분야는 다른 분야와 활동의 성과를 개선하되 환경목표에 피해를 주지 않는 분야이다. 아세안 택소노미 버전 1은 기후변화 완화 원칙에 근거하여 아래의 분야를 구현분야로 선정했다.[139]

---

137) 말레이시아 택소노미는 적용분야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지 않는다. GFIT, 앞의 문헌(註16), p. 13.

138) 싱가포르 택소노미(안) 1차 보고서의 경우 기후변화 기여도(온실가스 배출)는 아세안 택소노미와 마찬가지로 CAIT의 2011년 이후 누적 자료를 활용했고, 경제활동 기여도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다지역 입출력 데이터베이스 2017년 자료를 활용했다. 2차 보고서는 이를 CAIT의 2013년 이후 누적 자료와 아시아개발은행의 2020년 자료로 업데이트했다. 1차 보고서와 2차 보고서는 동일하게 아래의 표와 같이 적용분야를 선택했다(비중과 비고의 내용은 2차 보고서를 기준으로 기재했다). GFIT, 앞의 문헌(註16), pp. 31-46 및 GFIT, 앞의 문헌(註45), pp. 24-39 참조.

분야	온실가스배출 비중 (2018)	경제활동 비중 (2020)	비고
농업 및 임업/토지사용	39.7%	3.2%	- 아세안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 1위 - 경제활동 기여도 10위
건설업/부동산업	9.6%	17%	- 아세안 최대 경제분야 - 건설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는 제조 및 건물 포함
운송 및 연료	16.2%	3.6%	- 벙커유는 싱가포르 온실가스 배출의 70% 이상 기여 - 운송 및 연료는 아세안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 4위
에너지 (업스트림 포함)	18.9%	2.7%	- 전력 및 난방은 아세안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 2위
제조업	5.4%	16.2%	- 경제활동 기여도 상당히 높음
합계	89.8%	42.7%	

139) ATB, 앞의 문헌, p. 38.

www.kci.go.kr

<표 7> 추가표준의 구현분야

ISIC 코드	분야	설명
J	정보통신업 (ICT)	고배출 분야 활동의 디지털 전환과 효율성 강화에 중요함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경제 탈탄소화와 연계된 효율성 측정, 기술조사, 연구의 수행에 관련됨
-	탄소 포집, 활용 및 보관업 (CCUS)	탄소배출의 인공포집, 보관, 제품전환은 고배출 분야의 구현활동에 필수적이나 ISIC 분류에 포착되지 않음

아세안 택소노미가 구현분야를 추가한 것도 싱가포르 택소노미(안)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싱가포르 택소노미는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 데이터에 근거한 계량심사에서는 지목받지 못했지만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해 중요한 분야를 포함시키며, 이를 '구현분야(enablers)' 또는 '기후변화 완화를 가능하게 하는 물품과 용역을 제공하는 분야'라고 지칭한다.[140]

그밖에 아세안 택소노미는 금융 및 보험업을 포함하면서, 금융기관은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신규 녹색 상품,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고, 보험활동은 기후변화로 인한 투자위험 관리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한다.[141]

(다) 입상도 수준

ISIC와 아세안 회원국의 국가표준산업분류는 소분류 수준까지 상당히 유사하다. 따라서 ISIC의 대분류(알파벳 문자), 중분류(2자리 숫자), 소분류(3자리 숫자)는 집중분야 식별의 시작점으로 활용됐다.[142] ISIC 소분류가 택소노미의 목적에 비추어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아세안 택소노미는 집중분야의 입상도 수준을 자체적으로 제고했다. 가령 ISIC는 발전, 송전, 배전업 소분류(351 Electric power generation,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하에 단일한 세분류(3510 Electric power generation,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만 두고 있어서, 아세안

140) 싱가포르 택소노미(안)은 정보통신업, 폐기물/순환경제, 탄소 포집 및 보관업을 구현분야로 선정했다. GFIT, 앞의 문헌(註16), pp. 47-48 및 GFIT, 앞의 문헌(註45), pp. 39-40.
141) ATB, 앞의 문헌, p. 38.
142) ATB, 앞의 문헌, p. 32.

www.kci.go.kr

택소노미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다양한 유형을 세분류로 추가했다.[143)]

(라) 적용분야 비교

아세안 택소노미의 추가표준과 싱가포르, EU, 한국 택소노미의 적용분야를 ISIC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144)]

<표 8> 아세안 택소노미(추가표준)와 싱가포르, EU, 한국 택소노미의 적용분야 비교

ISIC	분야	아세안	싱가포르	EU	한국
A	농업, 임업 및 어업	O	O	O	O
B	광업				
C	제조업	O	O	O	O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O	O	O	O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O	O	O	O
F	건설업	O	O	O	O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 및 창고업	O	O	O	O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정보통신업	O	O	O	
K	금융 및 보험업	O			
L	부동산업	O	O	O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O		O	O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O	
O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서비스업			O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O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O	
S	기타 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등				
U	국제 및 외국기관				

143) 아세안 택소노미는 이러한 활동을 'ISIC가 정의하지 않은 활동(Activities Not Defined by ISIC, 이하 'ANDBI')'이라고 부른다. ISIC와 ANDBI로 구성된 아세안 택소노미의 산업분류는 아세안 택소노미 부록 I에서 확인할 수 있다. ATB, 앞의 문헌, pp. 72-75 참조.

144) ATB, 앞의 문헌, p. 71 및 GFIT, 앞의 문헌(註16), pp. 29-53 참조.

www.kci.go.kr

ATB는 아세안 택소노미의 적용분야가 다른 주요 택소노미의 적용범위에 조응하므로 택소노미 간의 상호운용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고 자평한다.[145] 추가표준은 가능한 한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ATB는 아직 포함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아세안 택소노미의 다음 버전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다.[146]

(2) 심사기준 개발지침

심사기준은 경제활동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임계와 지표로서 EU, 한국 등 주요 택소노미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한다. 아세안 택소노미 버전 1은 개별 활동의 심사기준을 제시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다만 추가표준의 임계를 설정하기 위한 일반지침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접근방식이 아세안 회원국의 다양성, 집합적 야망의 중요성, 전환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을 감안한다고 밝힌다.[147] 아세안 택소노미가 규정하는 심사기준 개발의 일반지침은 아래와 같다.[148]

명확한 정의	임계는 특정 활동의 적격 여부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간단하며 정량화할 수 있어야 한다.
과학에 기초	임계는 가능한 한 과학적 정보에 기초해 선택해야 하고, 글로벌 목표의 달성을 목표로 해야 하며 국내 정책과 계획에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임계는 특정 기간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기적 개정의 대상이 돼야 한다.

말레이시아 택소노미는 심사기준을 사용하지 않지만, 싱가포르 택소노미는 용인 임계(tolerance thresholds)에 기반하여 경제활동을 평가하고 분류할 계획이다.[149] 싱가포르 택소노미는 심사기준의 입상도 측면에서 EU 택소노미와 유사할

145) ATB, 앞의 문헌, p. 39.
146) ATB, 앞의 문헌, p. 39.
147) ATB, 앞의 문헌, p. 43.
148) ATB, 앞의 문헌, p. 44.
149) GFIT, 앞의 문헌(註16), p. 71. 싱가포르 택소노미(안) 2차 보고서는 기후변화 완화 환경목표에 대한 에너지, 운송, 부동산 분야의 활동별 지표와 임계를 제안한다. GFIT, 앞의 문헌(註45),

www.kci.go.kr

것으로 예상되지만,[150] GFIT는 지표의 선정(세계적으로 일관될 수 있음)과 적절한 임계의 선정(동일한 과학적 목표에 기반하지만 지역별로 다르게 설정될 수 있음)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151] 또한 매우 정교한 규제를 정립한 EU와 달리, 지역적 차원의 규제가 부재하는 아세안에서는 경제활동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판정하는 임계를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152] 향후 아세안 택소노미와 싱가포르 택소노미의 심사기준은 서로 조응하며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153] 역내에서 상대적으로 발전 수준이 높은 싱가포르의 전술한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아세안 택소노미의 임계 수준은 EU 택소노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탄소배출 저감경로

탄소배출 저감경로(decarbonization pathway)는 특정 경제활동의 탄소배출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줄어드는 추세를 의미한다.[154] 경제활동마다 탈탄소 장애나 저탄소 대안과 같은 요소가 상이하므로 탄소배출 저감경로 역시 다르게 그려진다.[155] 탈탄소 장애가 존재하는 활동의 저감경로는 완만한 경사로 그려질 것이나, 저탄소 대안이 가용한 활동의 저감경로는 경사도가 가파를 것이다. 탄소배출 저감경로의 경사도가 가파를수록 빠르게 탄소중립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ATB는 개별 활동의 저감경로 경사도가 서로 다르더라도 아세안 택소노미가

---

pp. 53-90 참조. GFIT는 나머지 분야에 대한 활동별 심사기준을 2022년말까지 제안할 예정이다. GFIT, 앞의 문헌(註45), p. 124.

150) Karry Lai, (註78) 참조.

151) GFIT, 앞의 문헌(註16), p. 56.

152) GFIT, 앞의 문헌(註16), p. 15.

153) Karry Lai, 앞의 칼럼(註78) 참조. GFIT는 현재 싱가포르 택소노미는 일단 자국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됐으나, 다음 단계에서는 다른 아세안 국가들의 활동을 포괄할 것이라고 밝혔다. GFIT, 앞의 문헌(註45), p. 45.

154) ATB, 앞의 문헌, p. 44.

155) 아세안 택소노미는 다양한 탄소배출 저감경로의 유형을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탈탄소를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가 있는 활동의 사례로 시멘트(녹색 시멘트는 주요 건설사가 요구하는 20년 안전기록이 없어서 사용이 어려움)를, 탄소배출 저감경로가 상대적으로 선형적인 활동의 사례로 수도 및 하수 분야(시간의 흐름에 따라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가용 기술이 일부 존재함)를, 이미 실현 가능한 탄소배출 저감경로가 있는 활동의 사례로 발전(기존 화석연료 발전을 저가에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이미 존재함)을 꼽는다. ATB, 앞의 문헌, p. 44.

www.kci.go.kr

포괄하는 모든 활동의 종합적인 탄소배출 저감경로는 공통의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고 권고하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기후·환경목표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국제 투자자의 지속가능성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156]

(4) 적층식 임계

아세안 택소노미의 추가표준은 임계를 적층 방식(stacked approach)으로 개발한다. 이는 하나의 경제활동이 다수의 탄소배출 저감경로를 가지고 있어서 특정 시점에 두 개 이상의 임계를 참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157]

아래의 그림은 임계가 Tier 3(초급), Tier 2(중급), Tier 1(고급)의 삼층으로 개발된 경우를 나타낸다.[158] Tier 3은 임계를 엄격하지 않게 설정하는데, 가령 대중교통의 지역 평균 배출량을 임계로 정하여 개별 대중교통 프로젝트의 배출량이 BAU보다 개선되도록 한다. Tier 2는 Tier 3보다 엄격하지만 Tier 1에 미치지 못하는 중간 단계이다. Tier 3과 Tier 2는 장래에 순차적으로 만료된다. Tier 1은 2050년 탄소중립과 파리협정에 부합하여 주요 택소노미와 조응하며, 그 임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영(0)으로 수렴한다.

[그림 5] 적층 방식의 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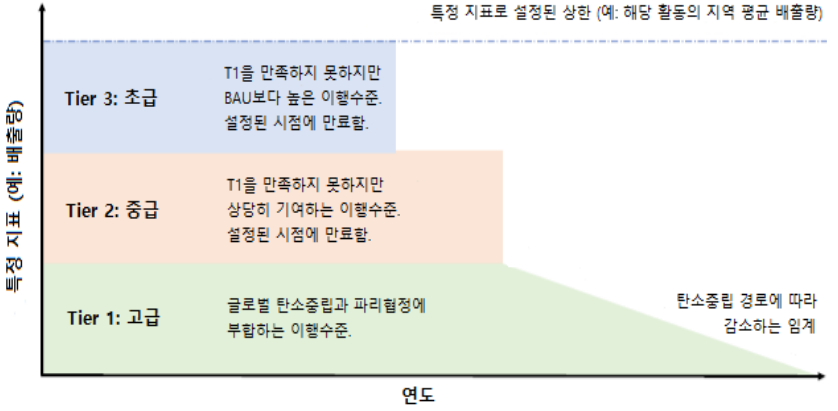

156) ATB, 앞의 문헌, p. 45 참조.
157) ATB, 앞의 문헌, p. 45.
158) ATB, 앞의 문헌, pp. 45-46.

www.kci.go.kr

아세안 택소노미의 적층 방식은 특정한 시점에 단일한 임계가 존재하는 EU나 한국의 택소노미와 다르며, 그린 워싱을 방지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한다는 택소노미의 목적에 엄격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ATB는 아세안 전역의 주체들이 서로 다른 시작점에 놓여있기 때문에 복수의 임계를 설정한다고 밝히며, 이는 일정 기간 동안 높은 배출을 허용하겠지만 낮은 Tier에는 만료연도를 규정하여 배출 저감을 진척시킬 것이라고 설명한다.[159] 또한 아세안 택소노미의 적층 방식이 다른 택소노미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며, 신뢰도와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중시하여 임계를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한다.[160]

임계는 과학에 기초한다.	임계는 심사기준 개발지침(이진법적, 과학에 기초, 정기적 개정)에 기초한다.
임계는 투명하다.	투자자는 임계가 녹색 기대에 부합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Tier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만료한다.	Tier 3는 단기적으로 사용되고 다음 Tier로 옮겨가야 한다. 시한은 활동마다 다르게 설정된다. (가령 전력은 2030년, 시멘트 제조는 2035년)
모든 Tier는 BAU를 넘어선다.	Tier 3도 해당 국가의 BAU보다 개선돼야 하며, 모든 국가는 현재 평균보다 악화된 배출량을 목표로 할 수 없다.
Tier는 정보에 기초한다.	아세안 회원국의 특정 활동에 대해 할당된 Tier는 해당 국가의 현재 시작점에 기초해야 한다. 이는 해당 국가의 선택이 아닌 정보에 따라 결정된다.
Tier는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저탄소 대안이 있는 활동에 대해 더욱 엄격하다.	실행 가능한 저탄소 대안이 있는 활동(가령 발전)에 대한 임계는 현재 평균이 아니라 무엇이 가능한지에 따라 설정한다. 저/무탄소 대안이 없는 활동(가령 시멘트)에 대한 임계는 현재의 모범 사례에 비추어 설정한다.

추가표준의 적층식 임계는 당장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지 못하는 과도기적 경제활동을 녹색 PS로 분류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황색 PS로 포섭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나, 전환 활동이 '순수한 녹색' 활동보다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161] 아세안 택소노미는 뒤처진 출발선에 놓인

159) ATB, 앞의 문헌, p. 45.
160) ATB, 앞의 문헌, p. 46.
161) 세계경제포럼(WEF)의 니키 켐프는 이머징 마켓의 과제는 전환이지만 '순수한 녹색'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태도가 프로젝트의 완전무결성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Karry Lai, 앞의 칼럼

www.kci.go.kr

회원국의 배출 저감에 보다 많은 자금을 동원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적층식 임계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GFMA는 아세안 택소노미가 복수의 탄소배출 저감경로를 설정해서 복잡하기는 하지만, 이는 아세안과 다른 지역의 택소노미가 서로 호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아세안 전역의 주체들이 동일한 경제활동의 배출량에서 서로 다른 시작점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162] 반대로 적층식 임계는 모든 경제활동이 당장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택소노미 간의 호환이 불확실해지고, 특히 EU와 같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택소노미가 존재하는 지역의 투자자는 아세안 택소노미를 활용할 경우에 자국의 요건을 중복적으로 확인해야 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163]

ATB는 활동별로 단일한 임계를 설정하는 것이 시장 참여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다른 택소노미와 비교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아세안 회원국의 시작점이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는 활동에 단일한 임계를 설정하면, 일부 회원국은 단기적으로 이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했다고 밝힌다.[164] 아세안 택소노미가 기반체계를 포함하는 다층 구조로 설계된 것과 마찬가지로 적층식 임계는 아세안 회원국의 다양한 발전 수준을 감안한 차선책이다. 그러나 적층식 임계와 달리 기반체계는 경제활동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므로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반면에 적층식 임계는 정량적인 기술적 심사기준을 사용하면서도 다양한 주체의 실상을 감안하여 임계의 수준을 달리한다. 따라서 택소노미의 포용성을 높이면서도 평가기준의 명확성을 담보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GFMA의 「기후금융 택소노미 개발을 위한 글로벌 지도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층식 임계가 명확하게 정의된 지표와 임계를 사용하면서도 전환 경로의 차이를 유연하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택소노미의 조화를 위한 모델로서 기반체계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된다.[165]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사용할 글로

(註61) 참조.

162) GFMA, 앞의 문헌(註66), pp. 4-5.

163) Karry Lai, 앞의 칼럼(註78) 참조.

164) ATB, 앞의 문헌, p. 87.

165) GFMA는 단일한 글로벌 택소노미의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인식 하에 2021. 6.「기후금융

www.kci.go.kr

벌 택소노미를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아세안 택소노미의 적층식 임계는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남북한이 통일한 미래를 가정한다면 한반도 경제의 탄소중립을 위해 K-택소노미를 발전시켜 남북에 동일한 지표를 적용하되 지역별 편차를 반영한 적층식 임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V. 아세안 택소노미의 적용

아세안 택소노미 버전 1은 녹색, 황색, 적색으로 분류될 수 있는 활동의 사례와 유형을 일반론의 수준에서 일부 제시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기반체계와 추가표준의 용례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천연가스·원자력 발전에 대한 아세안 택소노미의 태도를 확인한다.

1. 기반체계와 추가표준의 용례

(1) 녹색 활동

기반체계는 일반적으로 녹색으로 평가될 수 있는 활동을 결정트리를 통해 간편하게 녹색 FF로 분류함으로써 이해관계자에게 명확성을 제공한다. 아세안 택소노미는 부록에서 녹색이나 적색으로 자동 분류될 수 있는 활동의 목록을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추가표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밝힌다.[166)]

택소노미 개발을 위한 글로벌 지도원칙」을 발간했다. 이는 기후금융 택소노미 개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5개 주요 글로벌 지도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① 기후금융 택소노미는 자금사용목적(use of proceeds)을 넘어서서 단체 수준의 활동과 모든 적격 자본원천을 포착하기 위해 확장돼야 한다. ② 기후금융 택소노미는 성격상 객관적이어야 하고,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명확하게 정의된 지표와 임계, 과학에 기반한 타깃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③ 기후금융 택소노미는 일관된 일련의 원칙과 정의를 가져야 하지만, 전환 경로의 차이를 반영하는 지역적·시간적 변형을 위해 유연성을 제공해야 한다. ④ 기후금융 택소노미는 과학에 기반한 타깃를 사용하여 분야를 정의하고 적용해야 하며, 사용 편의성과 투명성 및 과감성의 균형을 맞추어 기후영향을 평가하고 제3자 인증을 지원해야 한다. ⑤ 기후변화 택소노미는 과감하고 포용적이며 투명한 행정 절차에 기반하고 지속적인 진화를 위한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 Global Financial Markets Association (GFMA), *Global Guiding Principles for Developing Climate Finance Taxonomies*, 2021. 6., p. 7.

www.kci.go.kr

아세안 택소노미는 녹색으로 자동 분류될 수 있는 활동의 목록(안)을 분야별로 제시하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167] ① 에너지: 재생에너지 발전, 재생에너지 송·배전, 녹색수소를 포함하는 에너지 저장 체계. ② 운송: 배기구 무배출 운송, 무배출 운송을 위한 인프라. ③ 제조: 저탄소 기술 생산(예: 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자동차, 녹색수소 등), 특정 저/무탄소 기술 설치(예: 폐열 보일러, LED 조명). ④ 건설 및 건물: 특정 저/무탄소 기술 설치(예: 폐열 보일러, 절연, 이중창, LED 조명), 국내 모범 사례인 신축 건물 인수. ⑤ 물, 폐기물, 기타 복원: 탄소 포집·사용·저장, 효율적 폐수·유기폐기물 처리장, 매립가스 포집.

배기구 무배출 승용차와 같이 기반체계에서 곧바로 녹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저배출 차량과 같이 종류가 다양해서 배출량이 녹색으로 분류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낮은지 추가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168]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는 추가표준이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사용하여 녹색 PS로 분류될 수 있는지 판단한다. 아세안 택소노미 버전 1은 활동별 심사기준의 개발을 다음 버전의 과제로 남겨두고 있지만, 가령 저배출 차량에 대해서는 절대적 배출 임계나 신규 승용차 평균 배출량에 기초한 임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169]

(2) 황색 활동

기반체계는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기후·환경 원칙을 충족하고, 다른 환경목표에 피해를 발생시키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을 황색 FF로 평가한다.[170] 결정트리의 탈탄소 관련 결정노드(1A, 1B, 1C)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특정 활동이 녹색 FF로 분류되려면 스스로 기후변화 완화를 지원하거나(1A) 다른 활동의 기후변화 완화 지원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1B). 그러나 황색 FF로 평가받기

166) ATB, 앞의 문헌, p. 82. 이는 녹색이나 적색으로 자동 분류되는 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ATB, 앞의 문헌, p. 84 참조.

167) ATB, 앞의 문헌, p. 82. 한편 말레이시아 택소노미는 부록에서 기후변화 완화와 기후변화 적응의 지도원칙을 일반적으로 충족하는 활동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기후변화 완화에 대해서는 아세안 택소노미보다 조금 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고 기후변화 적응은 아세안 택소노미가 아직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함께 참조할 만하다. BNM, 앞의 문헌, pp. 39-45 참조.

168) ATB, 앞의 문헌, p. 41.

169) ATB, 앞의 문헌, p. 41.

170) ATB, 앞의 문헌, p. 21.

www.kci.go.kr

위해서는 반드시 기후변화 완화를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온실가스 저감을 촉진하는 활동(1C)도 다른 필수기준을 충족하면 황색 FF로 분류될 수 있다.[171]

추가표준에서는 파리협정이 요구하는 탄소배출 저감경로에 비추어 특정 활동이 전환에 상당히 기여하는지 추가적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황색 PS로 평가될 활동은 전형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유형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것이라고 설명한다.[172] ① 현재 무배출이 아니거나 무배출에 가깝지 않은 활동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탄소배출 저감경로를 따르는 경우). ② 탈탄소를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가 있는 활동 (아직 저배출 대안이 없거나 실행 가능하지 않지만, 무배출 대안이 개발될 때까지 모든 가용한 단기적 배출저감 조치를 취하는 경우). ③ 과도기적 해법 (다른 대안에 비해 배출량이 낮으며, 대안적 저탄소 기술이 실행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해법으로 개발될 때까지 제한된 기간 동안 수행할 필요가 있는 활동으로서, 이러한 활동은 택소노미에서 종국적으로 부적격이 되며 추가표준이 적격성의 시한을 설정한다).

추가표준이 적층식 임계를 도입함으로써 뒤처진 주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임계를 허용하는 상황에서, 녹색 PS와 황색 PS를 구분 짓는 심사기준은 어느 수준에서 설정할 것인지, 일부 전환 활동에 대해서는 녹색 PS 없이 황색 PS의 범주만을 적용하면서 일몰 기한을 둘 것인지, 싱가포르 택소노미(안)과 달리 기존 활동뿐만 아니라 신규 활동도 황색으로 평가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아세안 택소노미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3) 적색 활동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지 않거나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활동은 적색으로 분류된다. 적색으로 자동 분류될 수 있는 활동의 목록(안)에 포함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173] ① 에너지: 탄소 포집·사용·저장이 가능하지

171) 아세안 택소노미 부록 J는 버킷별로 온실가스 저감을 촉진하는 활동(1C)의 예시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① 버킷 1(에너지 및 운송): 비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하는 대중교통 전기차. ② 버킷 2(건물/건설 및 제조):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건설. ③ 버킷 3(물 및 폐기물): 전반적인 시스템 효율성을 증대하는 수도 공급이나 폐수 처리. ATB, 앞의 문헌, p. 85.

172) ATB, 앞의 문헌, p. 42.

www.kci.go.kr

않은 석탄 및 석유 발전, 석탄 및 석유 발전의 폐열 회수, 석탄 채굴 또는 석유 탐사·정제·가공·제조. ② 운송: 신규 도로, 도로 교량, 도로 개축, 주차시설, 화석연료 충전소 등. ③ 폐기물: 매립 폐기물 수거, 가스 포집을 하지 않는 매립.

2. 천연가스·원자력 발전의 경우

택소노미와 관련된 논란의 중심에는 천연가스 발전과 원자력 발전이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원자력·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를 녹색경제 활동으로 인정하는 수정 위임법령을 2022. 2. 2. 원칙승인했다.[174] 이에 앞서 PSF는 원자력 발전은 DNSH를 보장하지 못하고 가스 발전은 그 기술심사기준 (270gCO_{2eq}/kWh 미만)이 녹색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며 집행위원회 초안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175] 하지만 집행위원회는 택소노미의 목적이 모든 가능한 방안을 동원하여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고, 전환 과정에서 가스와 원자력에 대한 민간 투자가 수행할 역할이 있다며 초안을 강행했다.[176] 이후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와 환경보전식품안전위원회가 원자력과 가스를 EU 택소노미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나,[177] 이 결의안이 2022. 7. 5. EU 전체 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유럽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원자력·가스 발전이 녹색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178]

---

173) ATB, 앞의 문헌, p. 83.

174) European Commission, 앞의 웹페이지(註74) 참조.

175) 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 (PSF), *Response to the Complementary Delegated Act*, 2021. 1. 24., pp. 3-4.

176) European Commission, “EU Taxonomy: Commission presents Complementary Climate Delegated Act to accelerate decarbonization”, European Commission 웹페이지, 2022. 2. 2.,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711 참조.

177) 경제통화위원회와 환경보전식품안전위원회의 유럽의회 의원들은 집행위원회 위임법령의 원자력·가스 발전에 대한 기술심사기준이 EU 택소노미 규칙 제3조에 규정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uropean Parliament, “Taxonomy: MEPs object to Commission’s plan to include gas and nuclear activities”, European Parliament 웹페이지, 2022. 6. 14.,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20613IPR32812/taxonomy-meps-object-to-commission-s-plan-to-include-gas-and-nuclear-activities 참조.

178) Kate Abnett, “EU parliament backs labelling gas and nuclear investments as green”, *Reuter*, 2022. 7. 7., https://www.reuters.com/business/sustainable-business/eu-parliament-vote-green-gas-nuclear-rules-2022-07-06/ 참조.

www.kci.go.kr

K-택소노미는 LNG 발전(340gCO_{2eq}/kWh 이내; 설계수명기간 동안 평균 250 gCO_{2eq}/kWh 달성)을 전환부문에 포함하고 있다.[179] 이에 대해 LNG 발전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어려우므로 녹색경제활동이 아닌 별도의 범주를 만들어 분류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180] 원자력 발전은 현재로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환경부는 K-택소노미 발표 당시 향후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원자력 발전의 포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181] 환경부 장관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초안을 발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2. 9. 이후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182]

싱가포르 택소노미(안)은 아세안 택소노미가 발표된 이후 공개된 2차 보고서에서 천연가스 발전의 적격성 기준을 설정했다. 즉, '천연가스 발전소를 녹색수소를 사용하도록 전환하여 생애주기 배출 원단위를 100gCO_2/kWh 미만으로 낮추는 경우'를 녹색으로, '기존 천연가스 발전소를 개장(retrofit)하여 생애주기 배출 원단위가 황색 임계[183]를 충족하도록 하는 경우'를 황색으로 평가하며, 신규 천연가스 발전소는 적색으로 배제한다.[184] 2차 보고서는 에너지 분야에서 여러 하위분야의 지표와 임계를 제안했지만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적격성 기준은 포함하지 않았다.

아세안 택소노미 버전 1은 특정 활동이 어떻게 분류될 것인지 아직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지만, 천연가스·원자력 발전에 대한 아세안 택소노미의 태도를 짐작하게 해주는 내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먼저 가스 발전에 대해서는 황색 PS에 관한 설명을 참조할 수 있다. 아세안 택소노미는 황색 PS로 분류되는 활동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그중 하나가 '과도기적 해법'이다. 과도기적 해법은 저탄소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제한된

179) 환경부, 앞의 문헌, 101면.
180) 기후솔루션 외, 앞의 입장문, 1-2면.
181) 환경부, 앞의 문헌, 11면.
182) 나혜윤, "한화진 "'원전' K-택소노미, 최종안 발표 9월 넘길 수도…유동성 있다"", 뉴스1, 2022. 8. 4., https://www.news1.kr/articles/4763253 참조.
183) 싱가포르 택소노미(안)에서 에너지 분야의 황색 임계는 2022~2025년에는 350gCO2/kWh, 2025~2030년에는 250gCO2/kWh, 2030~2035년에는 150gCO2/kWh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한다. GFIT, 앞의 문헌(註45), p. 55.
184) GFIT, 앞의 문헌(註45), p. 68.

www.kci.go.kr

기간 동안 수행할 필요가 있는 활동을 의미한다. 아세안 택소노미는 과도기적 해법의 단일한 예시로서 '탄소 포집 및 저장이 적용된 기존 천연가스 발전소의 발전'을 제시한다.[185] 이를 통해 기존 천연가스 발전소가 추가표준에서 정한 심사기준(가령 에너지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충족하도록 개장하는 경우 황색 PS로 평가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과도기적 해법은 이름 그대로 임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추가표준은 가스 발전이 황색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한을 함께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술한 싱가포르 택소노미(안)을 참조하면, 아세안 택소노미가 신축 천연가스 발전소도 황색 PS로 분류할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적색으로 자동 분류될 수 있는 활동의 목록(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원자력 발전은 적색 활동의 목록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아세안 택소노미는 녹색 및 적색 활동의 목록이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현재 황색에 해당하는 일부 활동이 녹색이나 적색으로 옮겨갈 수 있고, 적색에 해당하는 일부 활동이 녹색이나 황색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밝힌다.[186] 이때 적색에서 녹색이나 황색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활동의 단일한 예시로 들고 있는 것이 '원자력 폐기물 관리에 대한 DNSH 문제를 해결한 원자력 발전'이다. 이를 통해 향후 원자력 발전은 원자력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완화하지 못한다면 적색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절감한다면 황색(또는 녹색)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아세안 택소노미는 신호등 체계를 도입하여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을 녹색이 아닌 황색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세안 택소노미가 녹색이 아닌 별도의 범주를 만들어 과도기적 활동을 분류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아세안 택소노미가 에너지와 관련된 혼란을 회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존재하는 만큼,[187] 천연가스·원자력 발전과 같은 전환 활동이

185) ATB, 앞의 문헌, p. 42.

186) ATB, 앞의 문헌, p. 83.

187) AIGCC의 레베카 미쿨라-라이트는 가스화력발전의 택소노미 포함이 유럽과 한국에서 논란이 되었고 이는 아세안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에너지 활동의) 지나친 포함은 택소노미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에너지와 관련된 혼란을 회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www.kci.go.kr

아세안의 탄소중립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과 적격성 시한을 과학에 기초해 정립하는 작업이 중요할 것이다.[188]

Ⅵ. 맺음말

지금까지 아세안이 역내에 적용할 택소노미를 만든 취지는 무엇이고 경과는 어떠했는지, 아세안 택소노미가 다른 택소노미들과 구별되는 특징은 무엇이고 다층 택소노미의 기반체계와 추가표준이 경제활동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살펴봤다. 아세안 택소노미의 분류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189]

[그림 6] 아세안 택소노미의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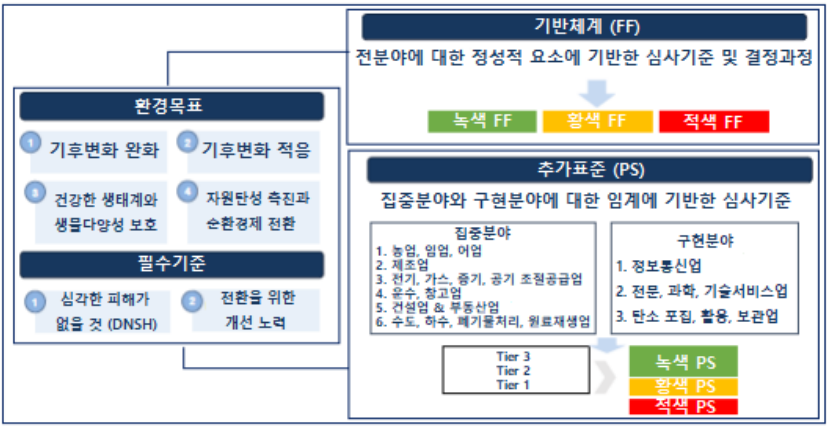

밝혔다. Karry Lai, 앞의 칼럼(註78) 참조.

188) 가령 천연가스는 시추·채굴(16~34%), 정제·액화(6~10%), 운송(2~11%), 재기화(1~3%), 소비(55~66%)의 전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최종 소비 단계인 발전소 연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과정 배출의 55~66%에 불과하다. 따라서 LNG 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대로 측정하려면 발전소 배출량만이 아니라 전과정 배출량을 산정하는 전과정 배출 평가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기후솔루션, 녹색분류체계 가스발전 포함에 대한 검토, 2021. 11. 16., 2-4면 참조.

189) ATB, 앞의 문헌, p. 41.

www.kci.go.kr

이 글은 아세안 택소노미의 특징을 뚜렷하게 드러내기 위해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역외(EU, 한국)와 역내(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기존 택소노미들과 비교하는 방식을 택했다. 본문에서 설명한 아세안 택소노미와 EU,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택소노미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9> 아세안, EU,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택소노미의 비교

		아세안	EU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다층 택소노미		O	X	X	X	X
신호등 체계		O	X	X	O	O
인정 요건	환경목표 기여	O	O	O	O	O
	DNSH	O	O	O	O	O
	전환을 위한 개선 노력	O	X	X	X	O
	최소한의 보호장치	X	O	O	O	△
판단 기준	(정성적) 결정트리	O (기반체계)	X	X	X	O
	(정량적) 심사기준	O (추가표준)	O	O	O	X

EU, 한국, 싱가포르의 택소노미는 환경목표 기여, DNSH,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요구하면서 정량적인 기술심사기준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다. 반면에 말레이시아 택소노미는 정성적인 지도원칙을 사용하며, 전환을 위한 개선 노력을 평가함으로써 녹색(기후지원), 적색(감시)뿐만 아니라 황색(전환)을 분류체계에 편입한다. (싱가포르 택소노미 역시 과도기적으로 신호등 체계를 도입한다는 점에서는 EU, 한국 택소노미와 구별된다.)

아세안 택소노미는 EU, 한국, 싱가포르 택소노미와 말레이시아 택소노미를 합쳐 놓은 모양새다. 아세안 택소노미의 기반체계는 말레이시아 택소노미와 유사하며 모든 분야의 경제활동을 단일한 결정트리에 따라 분류한다. 반면에 추가표준은 EU, 한국, 싱가포르 택소노미와 같이 활동별 심사기준을 사용하여 특정한 분야의 경제활동을 평가한다. 아세안 택소노미가 신호등 체계를 도입한 것은 기존 아세안 회원국 택소노미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아세안 택소노미가 다른 택소노미들과 동떨어지는 부분은 인권, 노동 등의 측면에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세안 택소노미는 개발 수준과 경제 구조가 천차만별인 회원국들의 다양한

www.kci.go.kr

상황과 수요를 감안하여 설계되다 보니 독특하고 타협적인 특성을 갖게 됐다. 개발도상국이나 중소기업에게 추가표준의 심사기준은 개발과 적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전제에서, 용이하고 즉각적인 사용이 가능한 기반체계의 결정트리를 추가했다. 나아가 추가표준의 심사기준에서도 적층식 임계를 설정하여 서로 다른 시작점에 놓인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여건에 맞추어 탄소중립을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 기반체계의 결정트리는 그린 워싱에 취약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추가표준의 적층식 임계는 일정 기간 동안 높은 수준의 배출을 허용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경제활동에 투자를 유도한다는 택소노미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폭넓은 이해관계자를 포용하고 고배출 회원국의 참여를 독려하려는 아세안 택소노미의 노력에도 수긍하게 된다. 향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괄하는 글로벌 택소노미의 정립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면 아세안 택소노미가 중요한 참고 사례로 언급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우리에게는 아세안 택소노미의 신호등 체계가 K-택소노미의 개선 방향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다.[190] K-택소노미는 경제활동이 녹색인지 아닌지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면서, LNG 발전과 같은 과도기적 경제활동을 전환부문에 포함하고 녹색으로 평가한다. 이로 인해 그린 워싱을 방지한다는 택소노미의 취지를 충실히 따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에 아세안 택소노미는 환경목표에 상당히 기여하는 활동을 녹색으로, 과도기적 전환 활동을 황색으로, 환경목표에 기여하지 않거나 환경에 피해를 입히는 활동을 적색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신호등 체계는 고탄소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택소노미 사용자들이 환경목표 기여도에 따라 경제활동을 차등적으로 분류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EU에서도 전체 자산의 5%에 불과한 택소노미 부합 자산에 지속가능 투자 수요가 쏠리게 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신호등 체계를 도입하여 택소노미를 확대하자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녹색분류체계가 “녹색을 녹색이라 하고, 녹색이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는” 명백한 신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191]

190) 아세안 택소노미 외에도 싱가포르 택소노미(안)과 같이 초기 단계에서 과도기적으로 신호등 체계를 도입하면서 기존 활동의 전환에 대해서만 황색 범주를 적용하는 사례를 함께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191) 윤세종, “빨간불에도 녹색 켜는 고장난 신호등”, 프레시안, 2022. 7. 26., https://h21.hani.co.kr/

www.kci.go.kr

아세안 택소노미에는 ‘지속가능금융을 위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버전 1은 여러 환경목표 중에서도 기후변화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ATB는 아세안 택소노미의 다음 버전에서 지속가능금융의 다른 영역을 포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류체계의 내용에 관해서도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기반체계는 유사한 분야를 버킷으로 묶어 질문을 적절하게 조정한 맞춤형 결정트리를 개발해야 한다. 추가표준은 아세안 각국의 현황을 파악하여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집중분야 외의 기타 분야를 점진적으로 택소노미에 포괄해야 한다. 인권과 노동 등에 관한 최소한의 보호기준을 도입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세안 택소노미의 평가기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발하고 운용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세안 택소노미가 역내외의 다른 택소노미들과 조응하여 과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고 아세안의 기후변화 대응에 성공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논문투고일 : 2022. 8. 4. 심사일 : 2022. 8. 22. 게재확정일 : 2022. 8. 23.

arti/society/environment/52344.html 참조.

www.kci.go.kr

참고문헌

[국내 문헌]

기후솔루션, 녹색분류체계 가스발전 포함에 대한 검토, 2021. 11. 16.

기후솔루션 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문, 2021. 11. 30.

나혜윤, "한화진 "'원전' K-택소노미, 최종안 발표 9월 넘길 수도…유동성 있다"", 뉴스1, 2022. 8. 4., https://www.news1.kr/articles/4763253

산업통상자원부 외,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및 NCP 활용 가이드, 2020.

윤세종, "빨간불에도 녹색 켜는 고장난 신호등", 프레시안, 2022. 7. 26., https://h21.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2344.html

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2021. 12.

[외국 문헌]

Kate Abnett, "EU parliament backs labelling gas and nuclear investments as green", *Reuter*, 2022. 7. 7., https://www.reuters.com/business/sustainable-business/eu-parliament-vote-green-gas-nuclear-rules-2022-07-06/

ASEAN, *ASEAN Community Vision 2025*, 2015.

ASEAN,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Blueprint 2025*, 2016.

ASEAN Capital Markets Forum, *Roadmap for ASEAN Sustainable Capital Markets*, 2020.

ASEAN Centre for Energy, "How Does ASEAN Coal Sector Look In The First Quarter Of 2019?", ASEAN Centre for Energy 웹페이지, 2019. 4. 4., https://aseanenergy.org/how-does-asean-coal-sector-look-in-the-first-quarter-of-2019/

ASEAN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 *Joint Statement of the 5th ASEAN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 2019. 4. 5.

ASEAN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 *Joint Statement of the 6th ASEAN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www.kci.go.kr

Meeting, 2020. 10. 2.

ASEAN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 *Joint Statement of the 7th ASEAN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 2021. 3. 30.

ASEAN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 *Joint Statement of the 8th ASEAN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 2022. 4. 8.

ASEAN Ministers for Energy, *Joint Ministerial Statement of the 37th ASEAN Ministers on Energy Meeting*, 2019. 9. 4.

ASEAN Secretariat, *AS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dicators Baseline Report 2020*, 2020. 11.

ASEAN Secretariat, "ASEAN development trajectories reach new milestone", ASEAN Secretariat 웹페이지, 2021. 8. 23., https://asean.org/asean-development-trajectories-reach-new-milestone/

ASEAN Secretariat, *ASEAN Investment Report 2020-2021 - investing in Industry 4.0*, 2021. 9.

ASEAN Secretariat, *ASEAN State of Climate Change Report*, 2021. 10.

ASEAN Secretariat, "ASEAN Sectoral Bodies Release ASEAN Taxonomy for Sustainable Finance - Version 1", ASEAN Secretariat 웹페이지, 2021. 11. 10., https://asean.org/asean-sectoral-bodies-release-asean-taxonomy-for-sustainable-finance-version-1/

ASEAN Senior Level Committee on Financial Integration, *Report on The Roles of ASEAN Central Banks in Managing Climate and Environment-related Risks*, 2020. 11. 17.

ASEAN Taxonomy Board, *ASEAN Taxonomy for Sustainable Finance - Version 1*, 2021. 11. 10.

ASEAN Working Committee on Capital Market Development, *Report on Promoting Sustainable Finance in ASEAN*, 2020. 4. 29.

Asian Development Bank, *Southeast Asia and the Economics of Global Climate*

www.kci.go.kr

Stabilization, 2015.

Asian Development Bank, *The Impact of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on the Energy Sector - Implications for ADB and its Developing Member Countries*, 2018. 7.

Bank Negara Malaysia, *Climate Change and Principle-based Taxonomy*, 2021. 4. 30.

Alex Burdulia, "Environmental Issues Take Precedence in ASEAN's Sustainable Finance Taxonomy", *The Diplomat*, 2022. 1. 12., https://thediplomat.com/2022/01/environmental-issues-take-precedence-in-aseans-sustainable-finance-taxonomy/

Climate Bonds Initiative, *Climate Bonds Taxonomy*, 2021. 9.

European Commission, "EU Taxonomy: Commission presents Complementary Climate Delegated Act to accelerate decarbonization", European Commission 웹페이지, 2022. 2. 2.,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711

European Commission, "EU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uropean Commission 웹페이지,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company-reporting-and-auditing/company-reporting/corporate-sustainability-reporting_en

European Commission, "EU Taxonomy for sustainable activities", European Commission 웹페이지,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711

European Commission, "International 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 European Commission 웹페이지,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banking-and-finance/sustainable-finance/international-platform-sustainable-finance_en

European Commissi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European Commission 웹페이지,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banking-and-finance/sustainable-finance/sustainability-rel

www.kci.go.kr

ated-disclosure-financial-services-sector_en

European Parliament, “Taxonomy: MEPs object to Commission’s plan to include gas and nuclear activities”, European Parliament 웹페이지, 2022. 6. 14.,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20613IPR32812/taxonomy-meps-object-to-commission-s-plan-to-include-gas-and-nuclear-activities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Regulation (EU) 2020/852 on the establishment of a framework to facilitate sustainable investment,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9/2088*, 2020. 6. 18.

Germanwatch, *Global Climate Risk Index 2021*, 2021. 1. 25.

Global Financial Markets Association, *Global Guiding Principles for Developing Climate Finance Taxonomies*, 2021. 6.

Global Financial Markets Association, *GFMA Response to the International Platform for Sustainable Finance’s Consultation on Common Ground Taxonomy*, 2021. 12. 21.

Green Finance Industry Taskforce, *Identifying a Green Taxonomy and Relevant Standards for Singapore and ASEAN*, 2021. 1. 28.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Global Warming of 1.5℃ - An IPCC Special Report on the impacts of global warming of 1.5°C above pre-industrial levels and related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 pathways, in the context of strengthening the global response to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fforts to eradicate poverty*, 2018.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2022: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 Working Group III contribution to the Six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2022. 4.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 *Sustainable Finance - High-level Definitions*, 2020. 5.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Ratifications of fundamental Conventions by

www.kci.go.kr

country", ILO 웹페이지, https://www.ilo.org/dyn/normlex/en/f?p=1000:10011:10853707103781::::P10011_DISPLAY_BY:1

International 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 *Common Ground Taxonomy - Climate Change Mitigation*, 2021. 11. 4.

Karry Lai, "PRIMER: ASEAN Taxonomy for Sustainable Finance - Version 1",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2022. 1. 7., https://www.iflr.com/article/b1w6rt1bbkbwr8/primer-asean-taxonomy-for-sustainable-finance-version-1

Karry Lai, "ASEAN Supply Chains Pressured to Go Green",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2022. 2. 10., https://www.iflr.com/article/b1wq6nqh1whyxk/asean-supply-chains-pressured-to-go-green

Karry Lai, "Breaking Down Constraints in Sustainable Finance for Emerging Asian Economies",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2022. 2. 25., https://www.iflr.com/article/b1wxjjc5t188xs/breaking-down-constraints-in-sustainable-finance-for-emerging-asian-economies

Kieran Mulvaney, "'It's now or never': UN climate report's 4 urgent takeaways", *National Geographic*, 2022. 4. 5., https://www.nationalgeographic.com/environment/article/now-or-never-un-climate-report-urgent-takeaways

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 *Response to the Complementary Delegated Act*, 2021. 1. 24.

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 *Public Consultation Report on Taxonomy Extension Options Linked to Environmental Objectives*, 2021. 7.

Platform on Sustainable Development, *Draft Report on Minimum Safeguards*, 2022. 7.

Sharon Seah, "ASEAN Taxonomy for Sustainable Finance: Putting Money Where the Mouth Is", ISEAS - Yusof Ishak Institute (Fulcrum) 웹페이지, 2022. 4. 8., https://fulcrum.sg/asean-taxonomy-for-sustainable-finance-putting-money-where-the-mouth-is/

United Nations,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www.kci.go.kr

Development", UN 웹페이지, https://sdgs.un.org/2030agenda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IFIs - Harmonization of Standards for GHG accounting", UNFCCC 웹페이지, https://unfccc.int/climate-action/sectoral-engagement/ifis-harmonization-of-standards-for-ghg-accounting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The Paris Agreement", UNFCCC 웹페이지, https://unfccc.int/process-and-meetings/the-paris-agreement/the-paris-agreement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Annual ASEAN green investment needs to grow 400% to guard against environmental risks", UNEP 웹페이지, 2017. 11. 15., https://www.unep.org/news-and-stories/press-release/annual-asean-green-investment-needs-grow-400-guard-against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Regional Road Map for Implementing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Asia and the Pacific*, 2017.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2011.

Mark Uhrynuk & Alexander W. Burdulia, "ASEAN Releases Sustainability Taxonomy for Southeast Asia", Mayer Brown 웹페이지, 2021. 11. 24., https://www.eyeonesg.com/2021/11/asean-releases-sustainability-taxonomy-for-southeast-asia/

Vietnam Government Portal, "Viet Nam leads Southeast Asia in transition to clean energy: The Economist", VGP News 웹페이지, 2022. 6. 6., https://en.baochinhphu.vn/viet-nam-leads-southeast-asia-in-transition-to-clean-energy-the-economist-111220606104952599.htm

Walk Free Foundation, *The Global Slavery Index 2018*, 2018.

[기타]

외교부, 아세안 개황, 2021. 12.

www.kci.go.kr

【Abstract】

A Study on the ASEAN Taxonomy for Sustainable Finance

Changmin CHOI
(JIPYONG LLC)

Our planet is facing a crisis with the changing climate. Southeast Asia is especially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ASEAN is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glob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considering its economic size and growth rate. At international,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ASEAN has declared its commitment to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To transform the ASEAN economy to be compatible with such commitments and the Paris Agreement, private capital must be financed for green economic activities at large scale.

After the Joint Meeting of the ASEAN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AFMGM)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sustainable finance, four ASEAN sectoral bodies established the ASEAN Taxonomy Board (ATB). The ATB announced "ASEAN Taxonomy for Sustainable Finance – Version 1"(ASEAN Taxonomy) on November 10, 2021. The ASEAN Taxonomy aims to help issuers and investors understand the sustainability impact of projects and economic activities in the region and make informed and efficient decisions.

This article explains the development history (Chapter II), purposes and characteristics (Chapter III), contents (Chapter IV) and applications (Chapter V) of the ASEAN Taxonomy. The main features that distinguish the ASEAN Taxonomy from other taxonomies are its multi-tiered structure and traffic light system. Chapter Ⅳ explains these structural features and detailed contents of the Foundation Framework (Tier 1) and Plus Standard (Tier 2) constituting the multi-tiered taxonomy. Chapter V presents examples of economic activities that can be classified into Green, Amber, and Red according to the ASEAN Taxonomy, and reviews its attitude toward the controversial issues of natural gas and nuclear power.

www.kci.go.kr

The characteristics of the ASEAN Taxonomy become more apparent when it is compared with other taxonomies. This article examin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ASEAN Taxonomy, the Korean Green Taxonomy, and the EU taxonomy. Notable aspects of Singaporean and Malaysian taxonomies will also be explained as these regulations had significant influence over the ASEAN Taxonomy.

The Foundation Framework of the ASEAN Taxonomy is similar to Malaysia's taxonomy and classifies economic activities in all sectors with a single decision tree. On the other hand, the Plus Standard evaluates economic activities in specific sectors using activity-level screening criteria like the taxonomies of EU, Korea, and Singapore. The ASEAN Taxonomy adopted a traffic light system and added the category of transition activities, which can be found in the taxonomies of Malaysia and Singapore. The ASEAN Taxonomy is different from other taxonomies in that it does not consider the minimum safeguards in terms of human rights and labor.

The title of the ASEAN Taxonomy includes the phrase of "for sustainable finance." However, the Version 1 of the ASEAN Taxonomy focuses on climate change mitigation, among other environmental goals. The ATB stated that the next versions of the ASEAN Taxonomy will move on to other sustainability aspects. There are also many areas to be further developed with regard to the content of its classification system. It is anticipated that the ASEAN Taxonomy will solve the challenges step by step in coordination with other taxonomies in and out of the region and successfully contribute to ASEAN's response to climate change.

주 제 어 지속가능금융, 택소노미, 아세안 지속가능금융 택소노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EU 택소노미, 말레이시아 기후변화 및 원칙 기반 택소노미, 싱가포르 택소노미

Key Words Sustainable Finance, Taxonomy, ASEAN Taxonomy for Sustainable Finance, K-Taxonomy, EU Taxonomy, Malaysia's Climate Change and Principle-based Taxonomy, Singapore Taxonomy

www.kci.go.kr